

INVENTION & PATENT

2011 August

08

Special Issue
[포커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UCSD) 클러스터 성공사례



INVENTION & PATENT _ Vol. 421



[IP 리포트]

중국특허법의
비밀유지심사제도

[Zoom in]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 전략

Contents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P Report

28	IP노트	혁신과 지속가능성장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
34	IP노트	한국형 IP시장 활성화 방안
40	IP 리포트	중국특허법의 비밀유지심사제도
44	Zoom in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 전략
50	특허확대경	2008허3407 특허법원 판결 사례로 본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적용 관련 공지의외 적용에 관한 고찰
60	시선집중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IP Column

68	포커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 클러스터 성공사례
74	IP 칼럼	불구수지역(不龜手之藥)
79	IP 칼럼	진정한 보상은 무엇일까?
82	특허에세이	독점하기 위한 특허

IP Information



86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89	KIPO NEWS	특허청 소식
92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9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96	건강하게 삽시다	효소다이어트와 요요방지
99	발명 365	철조망, 청바지
100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설명
101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2	신간안내	지식재산전략, 특허법
103	문화산책	
104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7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107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219개국 해외상표등록가이드



변리사 김윤배, 변호사 김선령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 Kims and Lees) 공저

세계 219개국의 상표관련 제도를 집약한 해외출원 안내서로서, 전세계 9개 권역별 상표제도의 특징과 함께 개별국가의 상표 출원·등록·심판제도를 간결하게 해설하고 상표에 관한 주요 조약의 현황, 해외상표출원과 사후관리, 마드리드 방식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등 해외상표제도의 기본 개요와 함께 각 권역별 상표출원 전략이 수록되어 있다.

“ 본문 p119에서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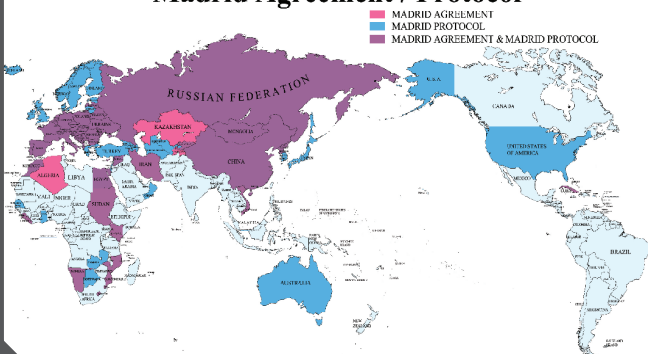
양장 컬러판으로 준비한 본서는 상표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별 개요를 원색지도와 함께 해설하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의 종합적 상표전략 수립과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관리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 제 1편 상표제도 및 상표출원실무해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절차 포함)
- 제 2편 ① 글로벌 상표제도 개요
② 전세계 9개 권역(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카리브해, 남미)의 권역별 상표제도 개요
③ 219개국의 국가 현황 및 상표출원 절차
- 제 3편 ① 상표 관련 주요 조약 현황 및 해설
② 해외 상표 출원, 등록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용어 해설

“ 본문 p74에서 발췌 ”

Madrid Agreement / Protocol



27. 영국 United Kingdom



1. 면적: 244,820km²
2. 인구: 61,113,205명(2009년)
8. GDP: 26,740억 달러, 1인당 GDP 45,574달러(2008년)

(78.2)

9. 주요 산업
 - 1)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주의로 발전 시켜온 영국의 경제가 20C 후반부터 장기간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 2) 제철, 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학, 섬유, 피혁
10. 국제기구 가입: UN, OECD, EU, The Commonwealth
11. 한국과 관계
 - 1) 정치: 1949년 수교(남북 동시 수교)
 - 2) 경제: 2008년 對韓 수출 36.4억 달러(주류, 의약품, 펌프, 합성수지)
2008년 對韓 수입 68.7억 달러(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 3) 기술 이전: 공업소유권 보호 협정

상표제도 개요

1. 상표법: 1994. 10. 31 개정
2. 조약: Paris Convention, WIPO, Nice Agreement, Madrid Protocol, TRIPS, CTM, TLT
3. 상표권의 종류: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4. 등록되는 상표: 기호, 문자, 숫자, 도형, 입체, 동작, 소리 등
5. 상품분류: NICE 분류 채택
6. 다류출원: 다류출원 가능
7. 출원 및 심사절차
 - 1) 출원
 - (1) 상표결본
 - (2) 출원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한 기재
 - 2) 심사절차
 - (1) 심사-광고-등록

문의 및 구입처

◆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Kims and Lees)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8층
Tel. 733-9991, kimsandlees@kimsandlees.com

◆집문당 (02-743-3192/3),

<컬러 양장판 500면, 값 150,000원>

남과 다른 창의적 생각으로 잠재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막을 축하하고, 오늘 수상하신 학생 및 교사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님,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님, 박재천 한국특허정보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의 우수한 발명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작품들도 많아, 학생발명전시회가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려 만 건 가까운 9,957건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9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구성중 학교 강혜지 학생의 발명품인 ‘깔끔 스테이플러’ 등 많은 학생들의 발명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발명품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애플사의 오랜 모토는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남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항상 남과 다른 창의적 생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잠재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애플사의 창업자이자 CEO인 스티브 잡스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가 세운 애플사에서도 쫓겨 나오기도 했으며, 지금도 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글귀를 마음속에 세기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미래를 보는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끈기있게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바쁜 교편생활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발명품을 출품하여 수상하신 선생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수상하신 학생 및 교사 여러분들께 축하드리며, 마지막으로 학생발명전시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수원 특허청장님과 이종원 조선일보 부국장님,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님, 한국특허정보원 박재천 원장님,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성취하게 된 학생들과 여러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특별한 동기와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소중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가기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남다른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빌게이츠가 유명한 독서광이란 사실을 잘 알고 계
시나요?

그의 남다른 독서의 모습은, 아버지의 독서에 대한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던 각종 컴퓨터프로그램도 책을 통한 깨우침이
계기가 되었고,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열정, 그리
고 꾸준한 도전정신으로 지금의 Microsoft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발명으
로 꿈을 이루어 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집안사정이 어려웠던 박승복 군은 1999
년에 전문계고에 입학하여 발명교실에서 발명교육을
받으면서 발명으로 창업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으며, 각종 발명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면서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
로 삼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여 2007년 대학시절
발명한 ‘휴대폰 착신알림장치’로 벤처기업을 창업하
는 등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합
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기에 계신 여러
분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입니
다. 전국의 내놓으라 하는 발명학생 중
에서 약 6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선정된 만큼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루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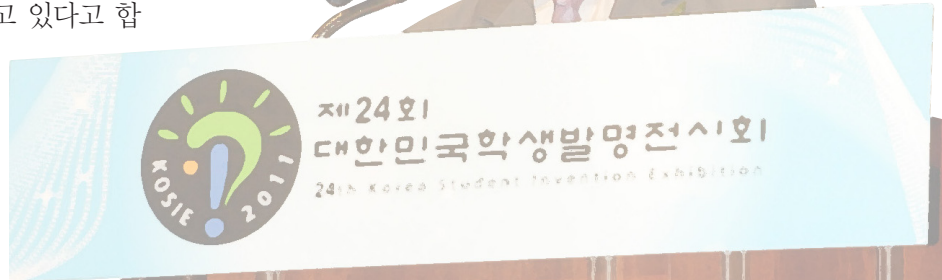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성과에 만족
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
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우리나
라를 빛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미래의 주역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
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
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발명왕 한자리에!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성황리 개최

트 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지난 7월 20일 **크** 부터 29일까지 열흘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10년 7,248점보다 37.4%가 증가한 9,957점의 발명품이 출품되어, 서류심사, 1·2차 심사 등을 거쳐 315건(학생 300점, 교사 15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전시장에는 학생 수상작 160점, 교원 수상작 9점 등 총 169점의 발명품이 전시되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깔끔 스테이플러」를 발명한 강혜지(경기구성중 3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국무총리상은 노종원(대전문정중 1년) 학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은 송재현(보성고 3년) 학생, 조선일보사장상은 강택현(경기창우초 6년)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송재현 학생이 이수원 특허청장 및 최종협 부회장 등 주요 내빈들에게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열린 발명교실', '야외 체험부스', '창의력 도전 프로그램', '과학영화 상영' 등이 운영되어, 전시회를 찾은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창의력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교원발명품경진대회와 발명아이디어그리기대회도 전시회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되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미래 지식재산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대통령상**

안전하고 편리한 '깔끔 스테이플러' 발명

강혜지 (경기 구성중 3학년)



“커서 생명과학관련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된다면 그땐 수술통 스테이플러를 발명하고 싶습니다.”

특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깔끔 스테이플러'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혜지 학생의 수상소감이다.

강혜지 학생은 스테이플러 침의 거칠고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스테이플러를 발명했다.

이 발명품은 일반 스테이플러의 기능에 펀치의 기능을 결합하여 제본 후 한 번 더 눌러줌으로써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깔끔 스테이플러'는 스테이플러 사용 후 작은 구리판이 펀치 역할을 하는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어린 아이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강혜지 학생은 “시험기간이라 학습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자주 이용했는데 손이 자주 찢리고 스테이플러 침끼리 엉켜 불편했다”면서 “아빠가 나를 위해 펀치로 눌러 주시는 모습에 착안하여 만들게

됐다”고 발명 동기를 밝혔다.

강혜지 학생은 “기존의 스테이플러와 비교해 외관상 차이도 거의 없고, 일반 스테이플러에 비해 추가 제작 비용도 적어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했다.

강혜지 학생은 “커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서 “과학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지금은 '깔끔 스테이플러'를 발명했지만 나중에는 수술통 스테이플러를 발명할 지도 모른다”며 포부를 밝혔다.



POINT

스테이플러와 플라이어를 결합시키는 구조로 종이에 찍은 스테이플러 침을 스테이플러에 첨가한 플라이어로 눌러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발명품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국무총리상

'샤프 원리 이용, 스틱형 압정제거기 발명'

노종원 (대전 문정중 1학년)



“어린 동생이 압정을 쉽고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샤프의 원리에서 착안해 발명하게 됐습니다.”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스틱형 압정제거기'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노종원 학생의 소감이다.

노종원 학생은 “집에 압정을 콧아 사용하는 코르크 메모판이 있는데 동생이 잘 뽑지 못하고, 뽑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압정제거기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종원 학생이 발명한 스틱형 압정제거기는 샤프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스프링 장치가 되어있는 안통을 누르면 압정제거기의 입구가 압정머리를 조여주어 안정한 압정 뽑기가 가능해진다. 또 내부 뚜껑에 자석을 붙여 뺀 압정을 통 안에 자동 보관되는 것이 특징이다.

노종원 학생은 “압정제거와 동시에 보관이 이루어져 압정 분실에 따르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뽑을 때 휘어짐이 없어 재사용률이 높아 경제적”이라면서 “스틱형이기 때문에 보관성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노종원 학생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 “앞으로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발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POINT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하여 한손에 쥘 들어오는 스틱형태의 압정제거기로서 뽑힌 압정이 형태 변화가 없어 재사용률이 높고 뺀 즉시 보관이 가능한 발명품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WIPO 사무총장상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종이컵 수거기 발명

송재현 (서울 보성고 3학년)



“**종**이컵 수거기가 꼭 반듯한 모양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송재현 학생의 당찬 소감이다.

송재현 학생이 발명한 ‘내용물 처리통이 구비된 종이컵 수거기’는 학생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고3이다 보니 독서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매번 화장실에서 잔여물을 처리한 후, 종이컵 수거기로 다시 가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져 발명하게 됐다”고 발명 동기를 설명했다.

송재현 학생이 발명한 ‘잔여물 처리 기능이 구비된 종이컵 수거기’는 기존의 종이컵 수거기의 구조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전기·기계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종이컵이 투입되면 컵은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튀어나와 있는 돌기 부분에 걸려 컵이 뒤집히고, 자연스럽게 잔여물이 쏟아지게 된다.

송재현 학생은 “발명품은 기존 종이컵 수거기에서 간단히 구조만을 변경했기 때문에 큰 비용이 필요 없다”면서 “그에 비해 효율성과 청결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재현 학생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사물의 반대편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면서 “생각을 펼쳐 한층 더 발전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POINT

종이컵을 수거기에 버릴 때 미처 내용물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가까운 화장실이나 세면대에 가서 처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명품.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조선일보사장상**

음식물 쓰레기가 손에 물을 염려... 끝!!

강택현 (경기 창우초 6년)



“**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때 손에 오수가 계속 묻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게 되었습니다.”

강택현 학생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당번을 하는 동안에 오수가 계속 손에 묻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Food Garbage Clear Bag'를 발명해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조선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

강택현 학생의 발명품 'Food Garbage Clear Bag'은 오수를 제거한 속봉투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겉봉투로 제작이 되어, 버릴 때 조임 줄을 당겨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치대와 뚜껑을 부착해 부엌에서 쉽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택현 학생은 “법규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오수를 따로 뺀 후 밖에 버려야 한다”면서 “손에 오수가 묻지 않기 때문에 외출 시에도 거부감 없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수수전분 등 생분해성 물질로 만들어진 비닐로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명주실을 이용하여 조임실을 만들었다”면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택현 학생은 “커서 로봇공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 나노로봇을 발명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택현 학생은 제44회 과학의날(11)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POINT

음식물 쓰레기의 오수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구멍이 뚫린 비닐팩과 조임실이 들어간 비닐팩으로 이중 비닐팩 구조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발명품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 명단

■ 학생부문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대통령상	경기구성중	3	강혜지	깔끔 스테이플러	대통령
국무총리상	대전문정중	1	노종원	스틱형 압정제거기	국무총리
WIPO 상	서울보성고	3	송재현	내용물 처리 통이 구비된 종이컵수거기	WIPO
조선일보사장상	경기창우초	6	강택현	Food Garbage Clear Bag	조선일보사장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경화여자고등학교	3	박수미	신발장 문을 열면 쉽게 잡히는 신발장	교과부장관
	삼일공업고등학교	2	도홍준	무게감지 안전 가스레인지	
	낙생고등학교	3	한호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향공기내 카트	
	환일고등학교	3	한재완	관절형 샤워헤드 걸이대	
	검단고등학교	3	박선주	손으로 할 필요가 있나??	
	보문고등학교	2	송창근	전기가 필요 없는 수력과 부력을 이용한 계란 부화기 고안 및 제작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1	홍춘석	랜선 플러그 복귀 핀	
	성수고등학교	3	이경목	스탠딩 지팡이	지경부장관
	대전구봉중학교	2	유정민	간편 세탁볼	
	호매실중학교	3	김성주	보조표찰 탈, 부착식 교실표찰	
	대전버드내중학교	3	이승엽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똑딱이 배수구	
	용인중학교	1	서진호	재난대비용 안전모 방식	
	석천중학교	1	유영우	빛나는 칫솔	
	분당초등학교	4	강민구	비상구 안심 세트	
불로초등학교	6	마승우	탭 나사 도우미	교과부장관	
나곡초등학교	6	김소진	편식하는 강아지를 위한 밥 잘 먹는 밥그릇		
포항영신고등학교	3	박성민	부피는작게! 효율은크게! 캔 압축 요술 분리수거통!		
대덕고등학교	3	김준규	조난발생 비상손전등을 포함하는 비상구유도등		
인천과학고등학교	2	황인택	지퍼백 원리를 이용한 옷자락이 쉽게 빠지는 버스 및 지하철 문		
창원사파고등학교	1	송유정	계량의자		
낙생고등학교	3	양예슬	비누화 반응을 이용한 미끄럼 방지 타일 스티커		
창원사파고등학교	1	박소정	매일매일 드레스업		
부산과학고등학교	1	장준석	웰빙신발		
효성여자고등학교	3	하가영	개방형 방법샤시		
은상	태성고등학교	2	이건희	산불진화용 페트병 장착형 등짐펌프	지경부장관
	명덕여자고등학교	2	이지은	어린이 교통 안전 오독이	
	포항영신고등학교	3	김명환	목발 의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	이정훈	수지장애우를 위한 자전거 발 브레이크 장치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보성고등학교	2	송진우	선반형 여행가방	지경부장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유소영	줄이고 늘이는 분리수거통	
대전대신고등학교	2	홍민기	바퀴의 남은 압력을 알려주는 바퀴 압력계	
은광여자고등학교	2	윤지원	코너신호등	
대전과학고등학교	2	윤종혁	압력을 이용한 휴대용 안전 가스 레인지	
경안고등학교	3	나동현	우리 아기 보호 멀티탭	
포항영신고등학교	3	류창우	축사 배설물 처리 및 청결 관리 시스템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2	이용주	트위스팅 머신	특허청장
대전외삼중학교	1	김민채	착한 변기 솔과 홀더	
성덕중학교	3	정혜진	H.B,P(Hair Band&Pin)	
대전글꽃중학교	2	임정희	똑딱이 테이프식 형광펜	
신기중학교	2	이원재	펫병과 알루미늄캔을 이용한 태양열 온풍기	
서일중학교	2	서재하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 예방방법	
교하중학교	2	이수진	레일을 탄 가위	
대전글꽃중학교	2	김철범	투척용 분말 소화기	
청라중학교	1	원창섭	돌이서도 충분한 주사위 야구놀이	
강북중학교	2	홍준기	가운데 정렬 가스버너	
연수중학교	3	소형석	물 절약 샤워기	
대전태평중학교	2	홍석진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보조받침대가 장착된 안전 똑배기 집게	
서운중학교	3	정현호	컵 안팎을 동시에 닦는 컵 세척기	
인천만석초등학교	5	이건영	접이식 연	
삼례초등학교	6	서희지	네모난 화장지	
대전둔천초등학교	4	정상현	자유자재의 변기 청소솔	
유현초등학교	4	신민석	다기능 주방 뒤집개	
이리고현초등학교	6	소한빈	나뭇가지형 극축정렬장치	
김포초등학교	6	한승원	비닐채(물고기를 사랑한 뜰채)	
대구두류초등학교	6	김재훈	비가와도 산책하기 편한 애완견용 우산	
부평초등학교	4	김상원	옷장 높은 곳도 척척 수납할 수 있게 해주는 계단식 서랍	
한국과학영재학교	2	강찬신	적외선을 이용한 철판키 게이저	한국발명진흥회장
하나고등학교	2	한원흠	위생 안전 진공 청소기	
세종고등학교	1	선종백	유기체 LED를 활용한 자가발전 워커	
대성고등학교	3	안상우	빛의 굴절 관찰 도구	
대전노은고등학교	3	김용재	원터치 스월(swirl) 회전판을 이용한 우산 빗물제거 장치	
포항영신고등학교	3	최영익	손상방지 고무장갑	
서운고등학교	2	김선숙	LED 횡단보도	
서일고등학교	3	박우진	사람이 앉으면 움직임이 고정되고 일어서면 쉽게 움직이는 의자	
낙생고등학교	2	이상옥	시간분할방식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위치표시 기능 강화 시스템 - 예상이동경로안내	
창원봉림고등학교	3	조현상	Swon Wheel Chain Bicycle	
경남과학고등학교	2	강규민	자꾸 가라앉는 티슈는 이제 그만, 뒤집어 티슈 케이스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삼일공업고등학교	2	박준혁	가압식 소스 배출용기 (Press Type Sauce Discharge Vessel)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경남과학고등학교	2	송아연	비뚤어지지 않는 클립보드	
	대전대신고등학교	2	김건무	버티컬 엇갈림 방지 막대	
	낙생고등학교	2	이제현	물건 걸리지 않는 서랍장	
	삼산고등학교	3	신희수	열판 노출 차단 다리미	
	인천과학고등학교	1	김소연	포스터 물감을 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감통	
	낙생고등학교	3	성민제	기어를 이용한 범람 시 진입 방지용 구조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	이교영	지하철 자리 간이분리대	
	성일고등학교	2	김동엽	피타고라스와 삼각비, 삼각함수를 배울 수 있는 각도기	
	대전반석고등학교	2	손표영	떨어질때 손잡이부분으로 떨어지는 식칼	
	세광고등학교	2	이기원	플러그 쉽게 뽑기 날개	
	중동고등학교	3	이상현	예초기의 안전장치	
	서일고등학교	1	주우진	길이조절 멀티탭	
	창원중앙고등학교	2	박철우	식칼 차단형 손가락 보호용 안전기구	
	대산고등학교	3	손정수	두루마리 화장지 과풀림 방지장치	
	성일고등학교	2	천주영	화분에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 할 수 있게 해주는 화분대	
	대전대신고등학교	3	도건형	물 절약 유도 샤워기	
	계룡고등학교	3	이재원	미닫이문 자동 닫힘장치	
	광주동신고등학교	1	김대훈	교통사고 사전예보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장
	낙생고등학교	2	류새안	탄성의 원리를 이용한 아광 공 삼각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2	고혜인	서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진해용원고등학교	1	전송희	똑똑이 겸 용기	
	검단고등학교	3	김다움	수험생을 위한 능률 향상 파일	
	경남항공고등학교	3	신무경	균형 맞추기 판형 평형대 키트	
	동신고등학교	1	남궁지혜	자세 교정기	
	용문고등학교	3	김형신	남녀노소 안전 칼	
	동광고등학교	3	최지은	컨베이어벨트와 유모차 핸들의 원리를 이용한 올라타기 쉬운 휠체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박민우	시각 장애 자동차 진동감지 오목거울	
	포항영신고등학교	3	이지우	휴지탄창	
	부광고등학교	3	서찬울	매너용 구두 캡	
경남항공고등학교	2	최안나	자전거용 냉·온기(冷·溫器)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	김한	버스 물건 걸이대		
영생고등학교	3	김지혜	가스레인지의 어린이 점화 방지장치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최진환	볼조인트의 원리를 이용한 간편 정리 이어폰		
한성과학고등학교	1	오지환	안전장치, 심 제거장치가 있는 스테이플러		
남대전고등학교	1	변종원	다용도 크로스 옷걸이		
남대전고등학교	1	정원석	손쉽게 늘어나는 의자		
광주공업고등학교	3	김동식	회전식 간편 서랍장		





동상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청소년	0	유진우	다기능 이중 음료수용기	한국무역협회장
	광명북중학교	2	심규혁	좌석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좌변기시트	
	윤리중학교	1	이민경	넘치지 않는 스킨병	
	반포중학교	3	정제윤	아이젠 스노우 부츠	
	광명북중학교	2	김동현	보관이 편리한 도료 케이스	
	현산중학교	2	이재훈	안전한 엘리베이터	
	전주풍남중학교	2	임승진	크기조절이 가능한 분리형 반창고	
	산곡남중학교	2	한승엽	밝으면 LED가 켜지는 안전 계단	
	포항제철중학교	2	김승혜	회전접시꽃이	
	성덕중학교	3	김학준	엘리베이터의 안내심	
	연수중학교	2	백준호	보관이 쉬운 헤드셋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덕중학교	2	조양래	보온 고무 장갑 및 장화	
	성덕중학교	3	박관우	애완견 먹이 자동 공급 장치	
	광릉중학교	1	김소연	수납형 거울과 빗	
	산곡여자중학교	3	채지혜	식물을 모아주는 식물 지지대	
	나곡중학교	3	김해림	테이프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완강 보조기	
	경신중학교	1	장인환	스포이트가 달린 섬유유연제통	
	대전글꽃중학교	2	강유경	높이조절과 정리가 편리한 빨래판	
	대전글꽃중학교	2	장지윤	엣나감이 없는 2단 받침 눈금 자	
	강북중학교	1	이진수	만져지지 않는 신비한 스위치	
	회원중학교	3	오제이	폐 휴대폰을 이용한 충전식 라이트	대한변리사회장
	여도중학교	3	임진하	다중 접이식 옷걸이	
	대전국제학교	7	김소희	일체형 태블릿PC 및 노트북 받침대	
	아양중학교	2	김재동	태블릿 마우스	
	연수중학교	2	박찬우	지진재해방지 에어백	
	대성중학교	2	이윤표	레일과 탄성을 이용한 안전칼받침자	
	삼성중학교	3	김효정	배드민턴슬라이더	
	설봉중학교	2	이유리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자를 예방하는 장치	
	능허대중학교	3	조상원	물구나무서기 쿠션	
	시흥능곡중학교	2	이상희	쉽게 여는 페트병 뚜껑	
대전법동중학교	2	양해성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퍼즐		
대전버드내초등학교	6	장훈창	손전등 라이트펜		
여수중앙초등학교	6	조희정	거미줄 칼날		
전주북일초등학교	6	임철용	물 짜기가 용이한 대걸레		
살레시오초등학교	6	김재원	초음파 진동자를 이용한 칫솔		
서울옥수초등학교	5	김희선	한지 기름 흡착 컵라면		
태강삼육초등학교	5	김세호	부력(공기방울)을 이용한 페달 형 변기 물 내림장치		
대구남동초등학교	5	남기림	밟아서 떼는 껌칼		
유현초등학교	5	정예림	과일 수확용 바구니 가위		
양도초등학교	5	정주현	용수철 원리를 이용한 일회용 비닐장갑 거치대와 그 속의 비밀 무기 알뜰 주걱		
주천초등학교	6	이윤정	비닐사용이 편리한 쓰레기통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동주초등학교	5	박상현	끼임안전서랍	한국특허정보원장
	세류초등학교	5	이동규	렌지후드의 팬 개선	
	이리고현초등학교	5	최원준	수업 기압 실험 장치	
	대덕초등학교	5	곽민기	실외, 실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방바퀴	
	서울신내초등학교	4	김지환	던지는 안전삼각대	
	태강삼육초등학교	6	황후아	화장실 문손잡이 병균, 냄새 안녕	
	서울선사초등학교	5	권 휘	변신하는 등산복	
	도농초등학교	4	최보빈	장화도 되는 운동화	
	인평초등학교	5	이종윤	선생님 사랑 마그네틱(Magnetic) 삼각자 세트	
함열초등학교	6	이지윤	자동수위조절 물고		

■ 단체상

구 분	시상종류	출 품 명
학 교	특허청장상	보성고등학교
		성덕중학교
		태강삼육초등학교
교육청	특허청장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제13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상 격	학 교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전북과학고등학교	김병삼	아기가 먹어도 해가 없는, 과학수사대 지문생성과 분석실험 - 에스라인 펜 향 잉크	교과부장관
은상	충남고등학교	김동하	교육용 LED 치아모형	지경부장관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조석희	신기 편리한 운동화	
동상	부산과학고등학교	김준수	뜨거움 표시 냄비 받침	특허청장
	상대초등학교	조재관	진동장치가 내장된 단층모형	
	대전하기중학교	김기환	접착식 1회용 유아 턱받이	
특별상	중앙중학교	임종우	배달음식용 박스를 이용한 종이접이 위생장갑	조선일보사장
	명덕여자고등학교	고영수	절전을 위해 사용 가능 전력의 양을 알려주는 기기	
장려상	수성중학교	홍호영	비행조절 바람개비	한국발명진흥회장
	죽향초등학교	한영환	쉽게 뜯는 은박뚜껑	
	충원고등학교	김종민	디지털 키보드	
	성덕중학교	임영주	신호를 보내는 안전 인조 잔디	
	구성초등학교	김종인	입구가 따로 있는 가족용 치약	
	효성여자고등학교	우상수	칠판용 자	
안동영호초등학교	이원희	100% 활공 가능한 글라이더 견인줄		



우수 발명인재 성공사례 공모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킨 학생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발명교육의 확산 및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명** : 우수 발명인재 성공사례 공모

■ **주최 / 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공모대상**

- 발명교육을 받아본 경험 혹은 발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례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공모기간** : 2011. 7. 25(월) ~ 8. 29(월)

■ **공모내용**

- 발명을 통한 창업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사례 등
- 발명과 관련하여 자기개발, 취업 등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및 교훈을 경험한 사례 등
- 발명 또는 발명대회를 접하면서 개인의 역량 증진, 성격 변화, 학업 성취도 증대 등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 등

■ **공모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기타** : 최종 소재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 지급 및 발명교육 성공사례로 소개

■ **접수 및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02-3459-2747)
- 제출처(이메일 접수) : 3538@kipa.org

201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신청 안내

201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박람회로서 우수발명기업의 기술을 시상하고,
일반인들에게 발명인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우수발명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오니
우수 발명 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 시 / 개 /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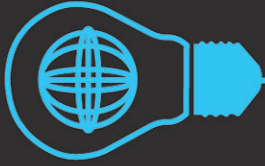
- 명칭 201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기간 2011. 12. 1(목) ~ 12. 4(일)
- 장소 서울시 삼성동 COEX Hall A
- 전시규모 100여개사 120부스 내외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및 상표디자인권전 동시 개최

출 / 품 / 신 / 청

- 접수기간 2011. 8. 2(화) ~ 9. 5(월)(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02-3459-2842,2792 / E-mail : khs3044@kipa.org)
- 제출서류(각3부씩제출) 신청서 및 출품물 설명요약서, 권리입증서류, 출품물 사진
- 신청자격 내국인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상표권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내 신청서 및 출품물 설명요약서, 신청방법 및 기타 내용 포함)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신청 안내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30개국 이상의 세계 최신의 발명품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발명·신제품 전문 전시회입니다.

발명품·신제품 홍보 및 기술 거래의 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여러분의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하십시오.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1 서울국제발명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2011)
- 주최/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기간 : 2011. 12. 1(목) - 12. 4(일)
- 장소 : 코엑스 Hall A
- 규모 : 36개국 651점 (2010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8. 2(화) - 10. 20(목)
- 신청서 : www.siif.org 또는 www.kipa.org (사업공고 또는 POPUP-ZONE참조)다운로드
-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품신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시상내역

- 본 상 : 대상, 준대상, 금·은·동 (상패 또는 메달 및 상장)
 - 특별 상 : 후원기관, 해외유관기관 제공
- ※ 현지심사에 의한 상격결정 및 12. 3(토) 시상식 개최예정

신청서 제출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 문의처 : 02-2-3459-2795, 2796/ siif@kipa.org
- 홈페이지 : www.siif.org

GOOD IDEA!

지식재산분야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개인 및 팀 제한 없음)
- ※ 팀 응모의 경우 3명 이내로 제한

■ 공모부문

- 발명 장려 : 발명의 가치를 제고하고, 발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 특허기술활용 : 특허기술을 이용한 평가·거래·사업화 지원 등 특허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 창의인재육성 : 지식재산분야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아이디어
- 기타 : 상기 3개 공모분야 외 지식재산분야 또는 우리회 발전과 관련된 아이디어 모두

■ 시상내역(※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수를 제한할 수 있음)

구분	시상인원	상금
최우수상	1명(또는 팀)	3백만 원
우수상	2명(또는 팀)	각 1백만 원
장려상	3명(또는 팀)	각 5십만 원

■ 신청서 등 접수방법

- 모든 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안서 첨부
 - * 제안서 작성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며, 제안서 외 추가 설명자료 별도 첨부 가능
- 2건 이상 제안서 접수시, 1작품당 1개씩 개별 접수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 : 02-3459-2725)

■ 주요일정

- 공모전 공고 : 2011. 8. 1
- 신청서 접수 : 2011. 8. 1 ~ 8. 31
- 기초·서류·최종심사 : 2011. 9. 5 ~ 10. 13
- 수상자 공지 : 2011. 10. 20(예정)
- 시상식 : 2011. 11월(예정)

■ 유의사항

- 응모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귀속됨
- 제안서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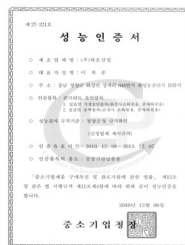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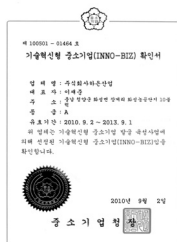
■ 주최 : 한국발명진흥회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벚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벚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벚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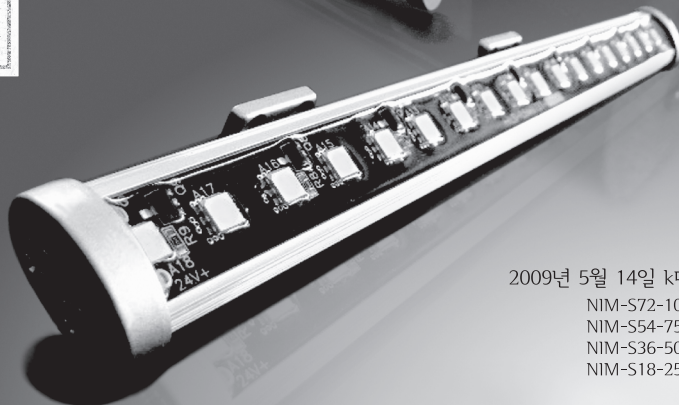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D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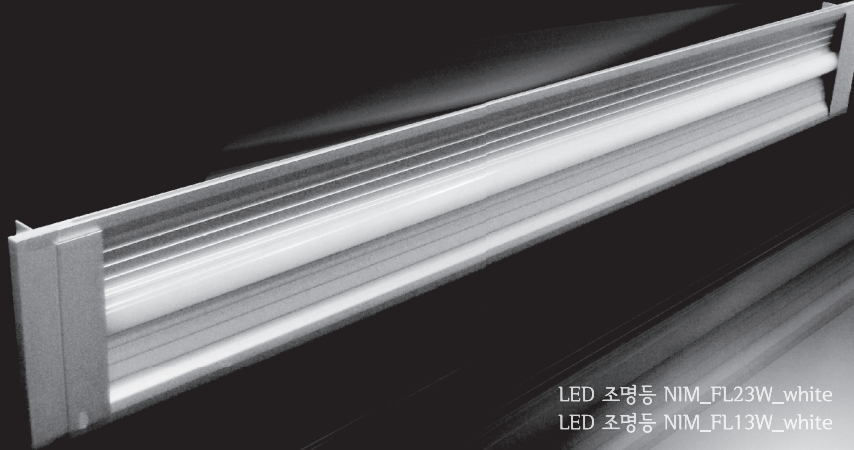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ECO FRIENDLY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즐거운 발명세상으로 모두 모여라!

‘간다! 천하무적 발명단!’

‘창의력 쓱쓱 상상력 팡팡!’
세상은 창의와 상상을 필요로 한다!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친구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5분!
TV앞으로 모여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간: 5월 3일 ~ 9월 13일, 총 20회)



발명교육센터(iec.kipo.go.kr) 또는 사이버아카데미(www.ipacademy.net) e-발명배움터를 통해
5월 19일 부터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좌충우돌 발명교실(5편) ◆ 간다! 천하무적 발명단(20편)

현지 전문가 직강 !! 미국 특허 실무 완전 정복 !!

“2011 글로벌 IP 전략인재 양성과정” 과정 신청 안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해외출원 및 분쟁 등이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업무 능력 및 분쟁역량 향상을 위하여 “글로벌 IP 전략인재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내용 및 특징

- 특허출원 절차(Prosecution), 소송(Litigation) 등에 대하여 이론뿐 아니라 사례 및 실무중심의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실습포함)을 통한 해외 특허 실무경험 공유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영어 강의시 질의응답 또는 우리말 Summary 강의

■ 강 사

-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Finnegan & Henderson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

■ 교육비

- 1개 과정당 47만원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 지원(94,000원 선납부)

■ 모집정원

- 25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기업 소속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교육일정

구분	교육과정(안)	교육일정(안)	교육진행	교육비 지원내용
미국특허실무 완전정복과정	특허법 기초 및 특허요건	07. 27-07. 29(3일간)	접수마감	-교육비 : 각 과정당 47만원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특허출원 및 OA대응	08. 17-08. 19(3일간)	접수마감	
	라이선스와 모의협상 및 특허침해	08. 31-09. 02(3일간)	접수중	
	특허소송 및 제도	09. 21-09. 23(3일간)	접수중	
아시아수출기업 특허전략과정	중국 특허출원 및 상표전략	10. 27-10. 28(2일간)	접수예정	
	일본 특허출원 및 상표전략	11. 21-11. 22(2일간)	접수예정	
해외연수과정	U.S. Patent Litigation Training Program for Asian Corporations	09. 26-09. 30(5일간)	접수예정	- 추후 상세안내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전화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pid@kipa.org) 및 FAX(02-3459-2859)접수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el: 02-3459-2806, 2852)

※ 세부 커리큘럼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2011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생활 속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발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 」가 개최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소중한 발명아이디어가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자신의 발명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 **참가부문** : 일반부문, 학생부문, 장애인부문, 과학부문

· 부문별 세부 참가 자격은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공지사항 참조

▶ **출품대상**

- 신청일 현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 및 고안, 디자인 등 (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1인 1건에 한하고, 공동발명의 경우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실용신안의 경우는 등록유지결정을 받기전의 고안에 한함
- 발명관련기관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 **접수기간** : 2011. 7. 25(월) ~ 9. 15(목)

▶ **제출서류**

- 신청서, 발명내용요약서, 설명서(이상 지정양식), 기타 참고자료
-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 공지사항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주최/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이메일(kwia01@inventor.or.kr),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135-9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011년 9월 15일 소인분까지 인정)
- 문의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전화 02-538-2710, 팩스 02-538-2714)

▶ **시상계획**

- 대통령상(1인) 4백만원, 국무총리상(1인) 3백만원
- 금상(4인) 각 2백만원, 은상(6인) 각 1백만원
- 동상(20인) 상패, 부상 / 장려상(20인) 상장, 부상
- 과학부문 최우수상(1인) 2백만원, 장애인부문 최우수상(1인) 2백만원
- ※ 시상인원은 참가 건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 **시상식 (예정)**

- 일시 : 2011년 11월 3일(목), 포스탈타워 3층 이벤트홀 (서울 역삼동 소재)
- ※ 여성발명경진대회와 우수사례발표회(올해의 여성 발명기업인상) 시상식 동시개최
- ※ 일정에 따라 시상식일이 변동될 수 있음

지금까지 없었다, 모두가 기다렸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시작!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외부 유출없이
존재시점과 위·변조 여부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
지금 만나보세요

www.tradesecret.or.kr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란

- 영업비밀로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시점과 원본여부를 입증해 주는 서비스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교유의 코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전자지문을 가짐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거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한글, MS워드, 엑셀, 이미지, 동영상 등)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활용처

-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 실적, 재무자료, 투자계획,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등
- 기타 원본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IP

Report

혁신과 지속가능성장에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

본 글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는 역할은 하는지,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지 지식재산 옹호론과 비판론을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김 흥 기 대표

현) 지식산업센터 INNO
중소기업청 CSR기술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전문위원
Kaist, Postec 영재기업인교육원 전문위원
특허청 감사위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영업비밀과 특허

영업비밀과 특허는 미국 지식재산 시스템 안에서 두 가지 별개 영역을 형성한다. 어떤 의미에서 영업비밀은 특허 시스템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기능한다. 대부분의 발명가는 (1) 기술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거나 (2) 특허법의 보호를 받거나 (3) 지식재산권 보호를 모두 거부하고 해당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영업비밀과 특허제도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발명가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허심사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신청서가 해당 발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주장하는 바가 분명한지 등을 포함한 수많은 법적요건을 고려한다.

특히 해당 발명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신청서에 따라 해당 발명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서는 해당 발명품을 실행하는데 지원자가 알고 있는 '최적의 모드' 혹은 선호하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법에 의해 규정된 실질적인 특정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 해당 발명은 4개의 주요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해당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한 한 개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미국특허법에 따르면 '과정, 기계, 제조, 합성물' 등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된다. 둘째, 해당 발명은 반드시 유용해야 하며, 이는 해당발명이 작동 가능하며 유형의 혜택을 제공해야만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다. 셋째, 해당 발명은 이전에 특허를



획득하거나 대중에 공개된 대상물 또는 다른 최첨단 지식과 구별되는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해당 발명이 이뤄진 시기에 대상물 전체가 해당 대상물과 관련된 분야의 통상 기술자에게 이미 분명한 것' 이라면 해당 발명은 특허를 획득할 수 없다. 이는 '진보성'의 요건으로 그 시점에서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지식을 고려했을 때 통상 기술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 허가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특허의 발행을 허가하면 발명가는 특허를 획득한 발명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미국 내 판매를 제안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획득하게 된다.

자신의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법이나 특허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발명가가 실질적으로 기술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모터나 기계 혹은 다른 기계적인 기술은 전문가에 의해 손쉽게 조사되어 그 설계가 드러날 수 있는 반면, 화학적 화합물은 구별하기 훨씬 어렵다.

또한 특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 특허는 미국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기 위해 미국 특허를 검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발명가는 유의미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특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특허 취득에는 수년이 걸린다. 특허 신청이 제출된 지 평균 25.8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허 심사관 한 명이 특허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같은 '1차 심사 대기 기간'은 2000년에 13.6개월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특허 신청의 누적 및 지연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지연은 발명가에게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는 편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영업비밀은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허는 제출된 날로부터 통상 2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그러나 경쟁 상대의 역설계 혹은 별도의 발견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가 사라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로스쿨의 Dan Burk 법대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발명가의 선택은 20년간의 확실한 특허 보호와 영구적이지만 덜 확실한 영업비밀 보호 중 하나를 뽑는 선거와 같다."

발명가가 해당발명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면 특허청이 해당 특허를 공식 문서로 발행한다. 이렇게 출판되면 해당 발명에 포함되어 공개된 이전의 모든 비밀 정보도 함께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특허청은 특허 신청이 제출된 지 '18개월의 만료기간이 지난 직후' 대기 중인 특허 신청을 상당수 발표한다.

18개월이 지난 후 특허청이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발명에 대한 특허를 발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표된 신청서 안에 포함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영업비밀과 특허 시스템은 때때로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업비밀 보호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기밀 유지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대로 특허를 받은 모든 발명은 공식 문서 및 해당 발명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담고 있는 특허 문서의 대상이다. 그 결과, 특허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를 막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영업비밀법이 '비밀유지가 가능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特許와 營業秘密’이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Mark Lemley 교수는 영업비밀법이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객명단이나 사업 계획과 같은 분야에 革新이 일어나도록 가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Lemley 교수는 비록 관련법이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비밀법이 없어도 기업은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 및 계약상의 조치를 더 강력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법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정보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커녕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특허법 원칙은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잘 정립된 특허법은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기 1년 이상 먼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해낸 발명가의 특허 출원권을 박탈한다.

이 정책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허기간의 통일성 유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특허법은 20년의 특허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는 특허가 제출된 날부터 시작된다. 만약 영업비밀 소유자가 특허 출원을 신청하기 수년 전부터 상업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특허 만료 기간을 연장하게 되

어 결과적으로 이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한편, 확정된 특허법 원칙에 따르면 ‘先 사용자’가 ‘나중에 특허를 획득한 발명가’를 이길 수 없다. 만약 선 발명가가 발명의 상업적 사용을 비밀로 유지했는데, 다른 사용자가 똑 같은 기술을 나중에 독립적으로 발명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면 영업비밀을 선택한 선 사용자는 특허법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정책은 일단 발표된 특허 문서는 대중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만 영업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후 발명가와 대중 공개를 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선택한 선 발명가 사이에서 법은 특허 소유자에게 더 유리했다.

예를 하나 들면 이 복잡한 법적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가 X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새 제조 과정을 발명했다고 가정해보자. 발명가 X는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신 해당 과정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년이 흐른 후, 발명가 Y가 독자적으로 똑 같은 제조 과정을 개발했고,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즉각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명가 X가 해당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발명가 Y가 특허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특허청이 해당 특허 신청을 승인하고 발명가 Y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명가 X는 특허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1999년 의회가 “先 사용자의 항변”을 미국 발명가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 포함시킬 때, 의회는 ‘營業秘密과 特許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통상의 규정을 수정했다. 이 법률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특허를 취득한 ‘사업 수행 방법’을 선 발명가가 이전부터 영업비밀로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특허권을 위반하게 된 정황에 대한 변호의 근거를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의회는 1998년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 대한 美 연방순회항소법정(Federal Circuit)의 견에 대응하여 이 조항을 특허를 취득한 사업 운영 방법에 국한시켰다. 이 사법적 의견은 해당 사업 방법을 영업비밀로 유지한 개인이 특허법 위반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사업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先 사용자의 항변’과 관련, 발명가 X가 새로운 사업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발명가 X는 이 사업 방법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수년이 경과한 후, 발명가 Y가 독립적으로 똑 같은 사업 방법을 개발하고, 즉시 이

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미국 발명가 보호법이 제정된 후더라도 선 발명가 X는 발명가 Y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청이 발명가 Y의 특허 신청을 승인하고 발명가 Y가 특허권 침해로 발명가 X를 고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명가 X는 선 발명가의 항변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발명가 X는 발명가 Y의 특허권 위반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John R. Thomas에 의하면 2010년 8월 당시까지, 선 사용자의 항변을 고려한 사법적 견해는 보고된 바 없었다고 한다. 선 사용자의 항변을 다룬 가장 유명한 사법적 처리는 2010년 *Bilski v. Kappos*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사업 방법에 대해 적절한 특허가 부여되도록 한 의회의 의도를 미국 발명가 보호법이 입증한다고 결론지었다. Stevens 판사는 동의 의견에서 “만약 본 법정이 273조항을 사업방법이 특허권 취득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로 사용할 줄 의회가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조항을 결코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분명한 견해를 표명했다.

111대 의회 이전에 제출된 법안은 선 사용자의 항변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 2009 개정 미국 특허법(Patent Reform Act of 2009)이라는 제목으

로 제출된 H.R. 1260과 S. 515 법안은 선 사용자의 항변을 1999년 제정됐을 때처럼 확대했을 수도 있다.

현재 선 사용자의 항변은 ‘항변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한 개인’에게 적용된다. 두 법안 모두 ‘해당 개인을 통솔하거나, 해당 개인에게 통솔 되거나, 해당 개인 및 다른 주체의 공동 통솔 하에 있는 모든 독립체’의 선 사용자의 항변 청구 자격을 허용했다. 역시 2009 개정 미국 특허법으로서 제출된 세 번째 법안 S. 910은 선 사용자의 항변을 다루고 있지 않다.



영업비밀과 보안

컴퓨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도처에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넘쳐나고 정보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여 보유한 정보를 기업이 기밀로 유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년 전, 영업비밀 절도는 보안 요원이나 감시 카메라를 피하여 실험 노트나 제안서 혹은 다른 문서를 경쟁사 사무실에서 빼내 오는 행위였다. 오늘날 회사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은 영업비밀을 지키기에 힘든 세상이다.”

미국 기업이 점점 더 글로벌 경쟁에 몰두하게 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도 산업 스파이 부분에 상당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방첩관실(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은 “기술 및 革新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게 있어 미국은 여전히 경제정보 수집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의 주요 타깃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입장이 되었으며 이는 단지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1996년 의회는 ‘경제 스파이 행위’와 ‘영업비밀 절도 행위’를 금지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을 제정했다. 동법에 의거하여 사법당국은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법원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벌금 및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 스파이 행위’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이 외국 정부나 기관에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알

고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영업비밀 무단유용을 행하거나 시도하거나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 절도 행위’ 금지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영업비밀 절도 행위를 구성하는 경제스파이법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절도, 도용, 파괴, 변경, 복제하는 행위로
- 2) 이 때 영업비밀은 주(州)간 상거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 3) 영업 비밀을 변경할 의도와
- 4)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한 절도, 도용, 파괴, 변경, 복제행위이다.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징역형은 상당히 무겁다. 경제스파이 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과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일 경우 벌금이 1천만 달러에 달한다. 영업비밀 절도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 및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는 최대 5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스파이법이 제정된 이래 극소수의 사건만 실제 기소가 이뤄졌고 동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는 의회가 형사법인 경제스파이법을 보충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연방 민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로 기존 시스템에 좀 더 많은 일관성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

R. Mark Halligan 변호사는 해당법의 ‘실효성이 없고’, 관찰결과 2008년 까지 해당 법 조항에 따른 기소가 60건도 채 이뤄지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데이턴 대학교 Susan W. Brenner 법대 교수와 Anthony C. Crescenzi 보안 전문가는 경제스파이법에 따른 기소가 ‘부족’한 것은 사건의 복잡성,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기소하려는 법무부의 경향, 기소에 따른 외교적과장, 소송기간에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영업비밀 공개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Brenner교수와 Crescenzi 보안 전문가는 “위에 논의된 시스템적 요소의 개별적·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경제스파이 행위를 방지할 무기로서 경제스파이법의 효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주(州) 차원의 영업비밀법을 연방차원으로 만들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다.

또한 경제스파이법이 경제 스파이 행위와 영업비밀 무단유용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 의회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의회는 아마도 연방 차원의 영업비밀법 도입을 고려하고 싶어 할 것이다. David S. Almeling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전역에 통용되는 영업비밀법의 통일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경제스파이법의 개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 개정 노력이 영업비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營業秘密과 特許’는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革新을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두 형태인 두 가지 법이 보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의 대체물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특허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여겨지는 법률 개정은 업계가 영업비밀법에 덜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역으로 특허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허법 개정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결어

M.Olson은 그의 유작 'Power and Prosperity' 에서 한 국가의 번영을 위해 명확히 정의된 개인의 재산권 및 계약권에 근거한 이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생산, 투자, 거래 등 경제적 행위의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식의 약탈행위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許와 영업비밀로 대표되는 지식 재산 제도는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매력을 제시하기에 革新을 통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치인 반면,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속 가능성장과 관련하여 知識의 전파와 확산을 오히려 가로막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현행 지식재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됨을 계기로 지식재산제도의 설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힘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知識'의 전파와 확산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부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Claude Henry & Joseph Stiglitz, 'Intellectual property, dissemination of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local Policy, 2010.10
- Bessen, J. and Meurer, M., 'Patent Failure : How judges, bureaucrats and lawyers put innovation at risk',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2008
- Duffy, J.F., 'Ending the patenting monopoly : The global transition to patent office decentralization', Patent Docs Blog, 2009.05
- Federal Trade Commission, 'To promote innovation :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Report by the FTC, 2003

- John R. Thomas, 'The role of trade secrets in innovation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2010.08
- 김상신, 최석준, '혁신활동 결과의 전유 방법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 기술혁신연구 17권 2호, 2010
- Arundel, A,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atents and secrecy for appropriation', Research Policy vol.30, 2001
- Mancur Olson, 'Power and Prosperity', 2000.11 2011. 8

본 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기 CIPO ACADEMY 과정 수료 논문입니다.

한국형 IP시장 활성화 방안

본 논문은 국내 지식기반생태계 생산자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지식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국내 IP 생태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IP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남정길 대표변리사 (아이시스 국제특허사무소)
 양계성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상연 상무 (SK텔레콤)
 전생규 상무 (LG전자)
 이완섭 대표이사 (원준산업개발(주))
 한상록 상무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홍석의 실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서론

현재 IP 비즈니스의 중심지는 미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시장 규모가 매우 크거니와, 미국이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지식기반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하여 IP 소송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 판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NPE(Non-Practicing Entity)가 생기고 있다. NPE는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특허의 활용 가치를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긍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국내의 현실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IP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선진기업과 결코 뒤지지 않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며, 국내 IP 시장의 리더로서

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IP의 주요 생산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소들은 IP의 양적 증대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과 선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 확보에는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강한 IP의 확보에 미진하여 해외 기업 또는 NPE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아이피큐브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인텔렉츄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창의자본이 생기는 하였으나, 이들 또한 한국 IP가 아닌 해외 IP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며, 아직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공공연구소 등 공공부문과 중소·중견기업의 IP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내 IP생태계를 형성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형 IP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공부문 IP의 공유를 통한 IP 활용도 제고 방안

우리나라의 국가 R&D의 주요성과 중 지식재산권은 양적으로는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도 만연해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 방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과 중심이라는 발명자 또는 제도적 특성보다는 실질적인 IP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은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기업 연구소는 우선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Solution 제공 위주의 기술과 3-5년 미만의 단·중기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은 중·장기 연구과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우 원천기술을 개발한 뒤 계속 시장에서 검증하면서 기술의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의 추가 개발과, 또한 원천

기술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망 구축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으나 공공 IP의 경우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특허 전략 자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추가로 공공부문에서는 비즈니스 경험이 부족하여 IP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침해 등의 IP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노하우가 부족하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창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보다 넓고 강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소홀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공공부문의 IP는 원천기술의 가능성은 높으나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 등 Market Risk가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공공 IP를 구매하는 매력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기술 이전 건수나 기술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상 기술료 수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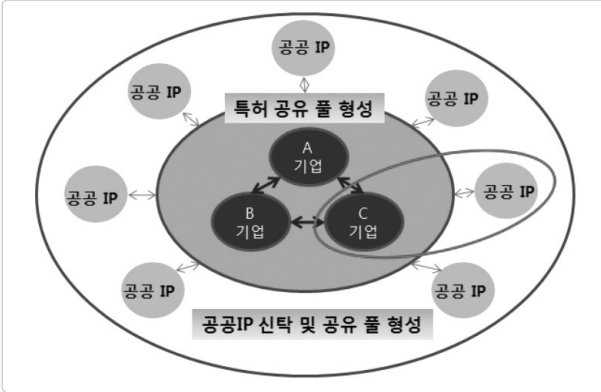
의 기술을 이전해 간 기업이 상기 기술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공공기술의 IP 시장 확대에 걸림돌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공 IP 공유 모델은 특허 공유 NPE와 특허 풀을 결합한 형태로서, 우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원천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공공 IP를 결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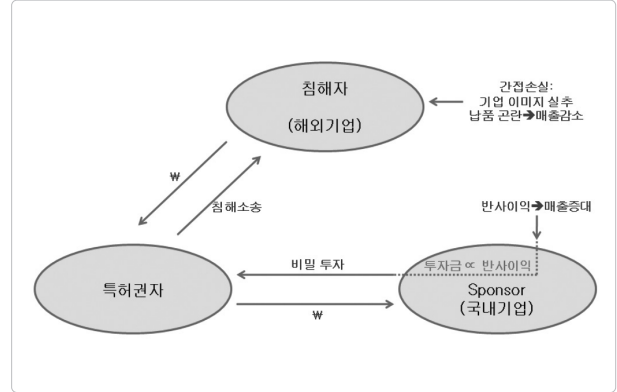
이 방안은 일반적인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의 일대일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확대하여, LED와 같은 특정 분야의 기업들의 협회 또는 협의체 등의 단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다수 기관과 관련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특허 공유 계약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상기 특허 공유 계약은 기존의 기술 라이선싱 계약보다는 다수의 이해관련자가 참여하게 되어 조금은 느슨한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특허의 가치를 매우 침해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공동사용료 관점에서 조금은 저렴하게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기술 사용자의 개별 부담은 줄고 특허권자의 전체 기술료 수익





[그림 1] 공공 IP 공유 모델



[그림 2] 스폰서 모델의 구조

은 지속적이며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계약의 형태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일차적인 계약은 협회와 공공 TLO와의 계약으로 시작되지만 협회 내 특정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한 활용으로 자사의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협회 내 기업에 한하여 개량기술의 공동연구 또는 개별 기술이전 계약을 추가하도록 오픈할 수 있으며(그림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한 케이스), 또한 각 특허마다 일정한 계약 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모델의 신뢰도가 증가할 경우 그리고 실제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협회로 상기 공공 IP를 신탁 또는 양도하여 모든 유지 관리 업무 및 침해 대응까지를 의뢰하는 방법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IP 공유 모델의 장점으로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같은 정부 주

도 NPE 모델이 아니므로 WTO 체제 하의 정부 참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으며, 우수한 공공 IP를 수집에 있어서 NPE와 같이 기술 매입이 아닌 신탁과 공동 사용이라는 관점에서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어 정부 투자에 대한 이익 환수라는 부담이 덜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수하지만 시장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IP들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에게 적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국내 IP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공공기술을 사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공고한 유대관계 확립이라는 부가가치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스폰서(Sponsor) 모델

한국에서 IP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지 못한 데에는 첫째, 주로 대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는 특허권자의 고정 관념, 둘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미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을의 고정 관념, 셋째, 특허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된다는 정부, 언론 및 국민의 고정 관념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스폰서 모델은 상기한 바와 같은 고정 관념을 깨뜨림으로써, 대기업을 특허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스폰서 모델의 3 당사자로서 침해자, 특허권자 및 스폰서가 있다. 침해자는 주로 다국적 해외 기업에 해당한다. 특허권자는 한국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특허권자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침해자인 해외 기업을 공격할 경우,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해외기업으로부터 반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폰서 모델의 특허권자로서 중소기업, 개인발명자,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이 바람직하다. 스폰서는 해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 해당하며, 주로 반사이익이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스폰서 모델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 중심으로 스폰서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특허권자 - 침해자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관계는 특허침해소송의 양 당사자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스폰서 모델에서 특허권자는 스폰서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 투자금을 활용하여 침해자와의 소송을 진행한다.

침해자 - 스폰서

침해자와 스폰서는 경업관계에 있으며,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 다만 특허침해의 사실이 알려지면 침해자의 기업 및 제품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며, 특허권자의 경고장을 받은 판매자가 침해품을 납품받기를 주저함에 따라 침해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침해자와 경업자 관계에 있는 스폰서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침해자에게 간접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스폰서에게 반사 이익이 발생하므로 침해자와 스폰서는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폰서 - 특허권자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스폰서는 반사 이익이 생길 것이므로 스폰서는 반사 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의 규모 또는 투자여부의 결정은 반사 이익과 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스폰서가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 스폰서는 해외업체인 침해자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스폰서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허권자와의 계약, 상법 제78-86조에 의한 익명조합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스폰서의 투자금을 활용하여 침해자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침해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스폰서에게 분배한다.



스폰서 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반사이익을 통하여 기대이익이 투자금보다 작은 문제 극복

한국특허가 활용되거나 유동화되지 아니하는 이유들 중 하나로 특허침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자금을 투여하여 특허권을 매입하고 소송을 진행하여도 그로 인하여 벌 수 있는 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자금이 특허에 유입되는 것이 저해된다. 그러나 상술한 스폰서 모델은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직접 이익(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간접 이익도 고려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기대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간접 이익에 비례하는 금액이 특허에 투자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특허의 활용에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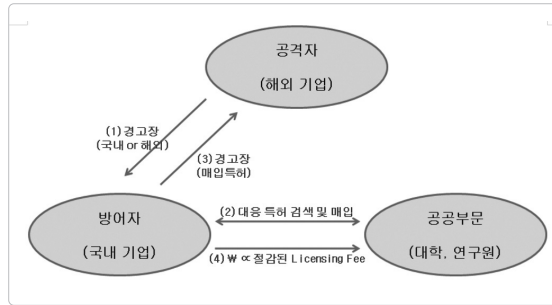
특허 친화적인 정서 함양

한국에서 반 특허적인 정서가 생기게 된 요인들 중 하나로서 언론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특허 사건에서 공격자는 해외 기업이고 방어자는 국내 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특허의 피해자로 부각되고 특허 제도는 국내 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스폰서 모델은 주로 해외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특허 제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내에 특허 친화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반 특허적인 정서가 생기게 된 요인들 중 다른 하나로서 국

내 특허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특허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상술한 스폰서 모델은 특허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발명과 특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특허 생태계 조성

상술한 바와 같이, 특허 친화적이 정서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승소율의 증대 및 손해배상액의 증대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발명자의 발명 의욕 고취로 이어져서 보다 좋은 특허가 양산되게 한다. 따라서 스폰서 모델은 한국의 특허 생태계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공공부문 특허를 활용한 침해 대응

4 공공부문 특허를 활용한 침해 대응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는 경우에 기존에는 침해여부판단, 무효자료조사, 회피설계 및 자사보유 공격가능 특허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응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유효한 방안이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이 공공부문의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해외기업의 특허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공공부문 특허를 활용한 침해 대응 방안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해외기업의 특허 공격

본 절에서 있어서, 특허 공격자는 다국적 해외 기업, 방어자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라 가정한다.

대응 특허 검색 및 매입

방어자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허를 검색 및 분석하여 공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하여 이를 매입한다. 여기에서 공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란 공격자의 제품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국내기업의 특허 공격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특허료 지급

만일 특허료를 절감된 비용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라이선싱 계약 등이 성립된 이후에 절감된 라이선싱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되파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라이선싱 계약 등이 성립된 이후에 특허권을 다시 원권리자에게 이전한다.

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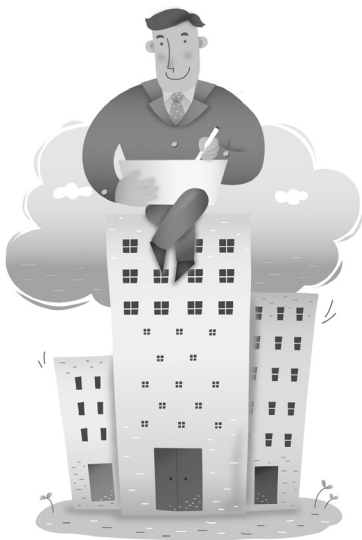
중소·중견 기업에게 보다 강한 특허 방어 기회 제공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전에 수행된 방법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본 방안의 경우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해외기업이 다국적기업이고 매우 많은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인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의 모든 특허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본 방안이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외 기업이 국내에도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특허를 구매하여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해외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협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 특허의 활용성 증대

본 방안은 공공부문 특허를 중소·중견 기업에 양도하는 모델이므로, 공공부문의 특허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 특허의 통합 검색 DB를 강화하고, 해외기업 제품의 특허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 있다면 더욱 많은 공공부문의 특허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업체 육성

수입제품이 국내특허(또는 공공부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흔히 요구된다. 현재 해외에는 Chipworks 및 Semiconductor Insights와 같은 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Reverse Engineering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상기의 특허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기 해외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이를 이용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이를 DB로서 보관하는 국내 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가 초기 DB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가 안정화될 때까지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으로써, 특허권자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의 일부를 각종 분쟁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벤처 캐피탈을 활용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업체를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상의 종말]에 의하면, 구글은 링크에 기반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검색 엔진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의 IP 시장도 새로운 알고리즘에 의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본고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논의될 수 있으면 한다. 2011. 8 |

본 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기 CIPO ACADEMY 과정 수료 논문 중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국특허법의 비밀유지심사제도

개정된 중국 특허법 제20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밀유지의 심사절차, 동조 위반의 효과, 외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특허법 제20조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김 태 수 변리사

현상성전자 반도체사업부 IP출원그룹
기술거래사(지식경제부)
2011년도 변리사실무수습 중국특허법 강사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실무연수

I. 서언

2009년 제3차 개정에서 특허법 제20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0년에 이와 관련된 중국특허법 실시세칙 및 중국 전리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정리되었다. 중국특허법 상의 비밀유지심사제도는 통상적으로 중국 내 우선 출원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미국 등의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특허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II. 개정법 내용

1. 2009년 제3차 개정 특허법 제20조

(1) 동조 제1항은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

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의하여 비밀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비밀심사의 절차 및 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심사의 절차 및 기한 등은 특허법 실시세칙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동조 제1항이 거절이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실시세칙 제65조에서 특허법 제2조 제1항은 무효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개정법의 의미

구 특허법 제20조 제1항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에 먼저 출원”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개정 특허법은 “어떤 단위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여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중국 선출원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Ⅲ. 비밀유지의 심사

1. 근거 규정

(1) 특허법 제4조

특허출원발명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특허법실시세칙 제7조

①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 특허기구에 수리하여 심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이 국방이익 외의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비밀유지 특허출원에 의해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비밀유지 심사, 거절불복 및 비밀유지 특허권이 무효선고의 특수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2. 비밀유지 사유

특허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국방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전리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한다.

3. 비밀유지 심사절차²⁾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비밀유지 심사통지서를 발송하며, 비밀유지

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특허출원으로 처리한다. 비밀유지특허출원은 비밀유지 해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비밀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비밀유지특허출원의 특허권수여공고는 특허번호, 특허출원일 및 특허권 수여공고일만을 공개한다.



Ⅳ. 위반의 효과

특허법 제20조는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71조³⁾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Ⅴ. 외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1. 개요

일반적으로, 한국기업 입장에서 특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 第二十条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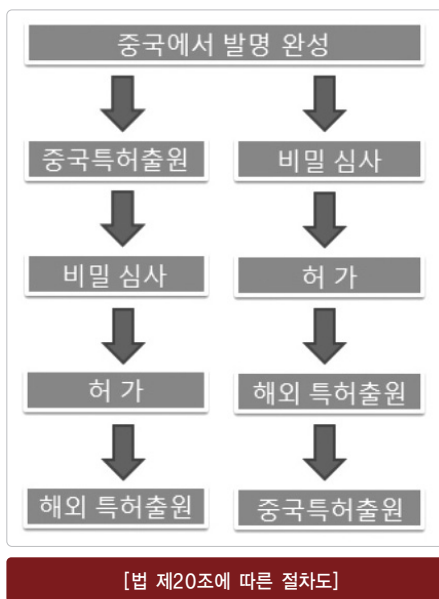
2) 专利审查指南(2010年),第五部分 第五章 참조.

3) 특허법 제71조: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비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허법 제20조는 중국 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중국 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 두 가지 경로⁴⁾

개정 특허법 제20조는 중국특허출원과 해외특허출원의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의한 비밀심사를 의무화하는 제한을 두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즉, 제3차 특허법 개정 전에는 미국 특허법 제184조⁵⁾ 및 185조⁶⁾와 같이,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은 중국에 먼저 선출원한 후 해외에 출원하여야 했다. 개정 특허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1) 외국에 선출원하는 경우⁷⁾

가. 비밀유지 심사청구서 제출

외국에 선출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출원하기 전에 중국특허청에 비밀유지 심사청구서 및 기술방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심사청구서 및 기술방안 설명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하며,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술방안 설명서는 중국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유지 심사기간⁸⁾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6개월 내에 심사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2) 중국특허출원 후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⁹⁾

중국에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비밀유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비밀유지 심사기간은 위의 내용과 같다.

(3) 국제출원의 경우¹⁰⁾

중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동시에 비밀유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밀유지 심사결과,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통지

를 하고,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국제단계절차를 종료함을 통지한다.



Ⅶ. 실무에의 적용

1. 중국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중국특허출원 증가 및 중국기업 또는 대학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이 많아질수록 중국에서의 연구 활동은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중국 특허법 제20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특허관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특허의 유효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¹¹⁾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은 비밀유지심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출원이 강제되는 국가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특허법과 충돌되지 않고 중국 및 해외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사례

중국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A가 미국에 있는 연구원 B와 함께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중국 특허법 제20조와 미국 특허법 제 184조가 모두 적용되고,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방법은 위에서 서술한 V.2.(1)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중국 특허법 제20 조는 중국 선출원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미국에 먼저 출원하여 미국특허법 제184조를 만족시키고 미국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중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3. 실무적인 출원 프로세스

위의 사례와 같이 공동연구가 진행 되어 중국 현지법인 또는 중국대학의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비밀유지 심사청구서와 함께 외국어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미국 등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밀유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서 기술방안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출원명세서의 형식과 동일하므로 중국명세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미국 등의 출원명세서는 위의 외국어서류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우선

일로부터 1년 내에 중국 외의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VII. 결론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특허, 공동연구에 대한 발명의 경우 중국에서 완성된 것인지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추후 분쟁발생시 무효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먼저 비밀유지심사를 받고 외국에 특허출원한 후 중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1. 8

4)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중국특허법 실시세칙 제8 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① 특허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한다.
②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아래의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 5) 미국 특허법 제184조는 "Except when authorized by a license obtained from the Commissioner of Patents a person shall not file or cause or authorize to be filed in any foreign country prior to six months after filing in the United States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an invention made in this country"라고 규정하고 있다.
- 6) 미국 특허법 제185조는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law any person, and his successors, assigns, or legal representatives, shall not receive a United States patent for an invention if that person, or his successors, assigns, or legal representatives shall, without procuring the license prescribed in section 184 of this title, have made, or consented to or assisted another's making,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for a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the inven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 7) 专利审查指南(2010年), 第五部分 第五章 6.1 참조.
- 8)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중국특허법 실시세칙 제9 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출원인에게 비밀유지 심사를 통지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 심사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비밀유지심사를 통지한 경우, 즉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9) 专利审查指南(2010年), 第五部分 第五章 6.2 참조.
- 10) 专利审查指南(2010年), 第五部分 第五章 6.3 참조.
- 11)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하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어느 청구항이 어느 발명자에 의하여 완성되었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청구항마다 발명자를 기재하고 있지 않다. 청구항은 발명을 정의한다는 원론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비밀유지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발생시 해당 청구항이 중국에서 완성되지 않은 발명임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 전략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와 실무를 소개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전략(사전적 전략 및 사후적 전략)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변 응 재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및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 교수
김&장 법률사무소, 중국 Junhe 법률사무소
및 현대차 중국지주회사 근무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서울대학교 및 Stanford Law School LL.M 졸업

1 들어가는 글

‘상업비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유사한 개념으로 흔히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영업비밀’ 보다는 ‘상업비밀’이란 용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9년에 발생한 리오틴토(Rio Tinto) 사건에서 리오틴토의 중국 상하이 대표처의 중국 지역 수석대표인 호주국적 중국인과 중국인 직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중국 철강 회사 관련 정보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중국 사법기관에 의하여 상업비밀 침해죄로 체포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와 실무를 소개하고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전략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이다. 이 법은 제10조에서 상업비밀을 “공중이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상업비밀의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업비밀침해의 유형은 (1) 절도, 이익으로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누설하거나 허용하는 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를 위반하고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누설하거나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제3자가 전항들에서 나열한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취득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도 간주한다. 이러한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영업비밀규제는 얼핏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으로서의 '이익으로 유혹(중국어로는 '利诱')'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7년에 '부정당경쟁 민사안건 심리 응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하였다. 이 사법해석에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예를 들어 비공개성의 정도, 비밀보호조치의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중국어로 '反向工程')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고객 명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항들도 열거하고 있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1995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약간의 규정(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도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중국 형법 제219조는 별도로 영업비밀침해죄를 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인민폐 50만 위안 이상 의미)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특별히 심각한 결과(권리자의 손실이 인민폐 2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의미)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형적인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징역 형량은 11개월에서 3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중국의 법률 제도는 나름대로 민사, 형사, 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중국의 모든 영업비밀 보호 제도는 기본적으로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상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그 침해 유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이 제정된 1993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작업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집행 측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법원에 의한 신속한 판결과 집행을 기대하기 보다는 행정부(공상행정관리국)와 사법기관(공안, 검찰 등)에 의한 신속한 법집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아직 효율적인 법원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중국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사법기관의 재량권이 넓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실무상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우리나라나 외국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 사법 실무상 간접손해 배상(이른바 ‘可得利益’ - 일실�이익의 배상)이 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



3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事前) 전략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법집행 기관들의 상업비밀 보호 관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비밀 보호 관련 적절한 사전적 예방조치는 ①상업비밀로서의 법적 요건(비밀조치 요건)을 충족시키고, ② 권리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어, 상업비밀 보

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적 비밀보호 조치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조직 측면에서의 조치

기업조직 측면에서는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주요 결정을 담당할 기구를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기업의 내부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公司治理)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이사회(중국식 용어로 ‘동사회’)나 이사회 산하의 별도 위원회(예를 들어 기업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실무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국기업의 일상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리(General Manager)가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기관 또는 인원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인원을 배정할 수도 있고, 기존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을 감독할 기관의 선정도 필

요한데, 중국 회사법상 그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감사(supervisor)의 기능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업비밀 관련 결정, 집행 및 감독 권한의 안배는 일반적인 중국 기업보다는 특히 중외 합자기업일 경우에 더욱 민감한 협의 사항이 될 것인데, 실무상 중외합자경영계약, 정관 또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합자파트너인 중국기업이 중국 국유기업일 경우에는 이 합자파트너를 통하여 다른 중국 국유기업에게도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나. 기업규정 측면에서의 조치

기업 내부 규정을 통해서 상업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업 내부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업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상업비밀 정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비밀’

이란 용어 자체도 다른 적절한 용어(예를 들어 '비밀정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반부정부당경쟁법상의 상업비밀은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에 추가하여 "누설될 경우 자사에 유해하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용한 것"도 상업비밀의 범주로 포함한다면, 기업 자신의 장단점 분석 자료, 과거의 실패한 연구 자료 등도 모두 기업자체의 상업비밀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연구개발 기능이 특히 강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이 접촉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추정' 하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업비밀 보호 및 침해와 관련하여 엄격한 상벌 규정을 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 상업비밀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

상업비밀에 대한 물리적 보호 조치는 상업비밀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특정 구역에 대한 비밀조치: 별도 벽이나 울타리 설치, 출입문 지정, 경비 또는 자동 폐문 장치 설치, 특

별 비밀구역 설치 등(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 회사에 외국기업이 기술을 제공해 줄 경우 외국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 (2) 생산설비, 생산 과정에 대한 비밀 조치: 비밀구역내 생산, 격리판 설치, 밀폐된 상자 안에서의 기계 운전, 외부에서의 전자적 조작 등
- (3) 원재료, 몰드 등에 대한 비밀조치: 밀폐용기 사용, 성분표기 하지 않고 별도 부호로 표시(다만, 이 경우 중국의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전제), 몰드 사용 시간 및 사용자 등 기록
- (4) 문서에 대한 비밀조치: 문서를 비밀등급 별로 분류하여 표시 및 관리(예를 들어 문서를 절대비밀, 기밀 및 비밀로 분류- 绝密, 机密, 秘密), 비밀보호 기간 확정, 문서의 열람 및 복제 절차 규정 등
- (5) 컴퓨터에 대한 비밀조치: 개인소유 노트북 사용,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에 대한 제한 등.
- (6) 기업 폐기물에 대한 관리: 특히 기업의 문서폐기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파쇄하는 것 고려

라. 대외 교류 중 상업비밀 관리

대외적인 광고 및 선전 자료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채택하

여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개최되는 많은 전시회 참석과 관련하여 아직 특히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제품은 사전에 기업내 상업비밀 보호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인의 회사 및 공장 참관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정하여 예를 들어 별도의 영빈관을 설치하여 여기에서만 영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장 참관시에는 특정 참관 라인을 따라서만 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필자의 실무 경험상 중국에서는 공장 실무자급에서 서로 공장 생산 라인을 참관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마. 대인적 관리

대인적 관리로서 중요한 것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관리와 이직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이다. 재직 중 직원 관련해서는 노동계약에 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을 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중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환 받는 작업(이른바 ‘清退’)이 필요하다. 특히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기업 중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직원이 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회사의 주요 계약서들을 모두 담아서 이직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실무상 직원의 이직 후 경업제한 관련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중국 노동계약법 제23조와 제24조의 다음과 같은 조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노동계약시 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준수 합의시 매월 경제보상금 지불조건으로 퇴직 후 경업제한을 약정할 수 있다. 경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업제한의 대상은 고급관리직, 고급기술직 및 기타 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직원에 국한된다. 경업제한의 범위, 지역, 기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간 약정에 따르며,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은 너무 지나친 경업제한 약정은 중국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여 오히려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업제한 약정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직한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 경험, 훈련 및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경우 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 큼)과 종전에 근무하던 기업의 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비한 자료(예를 들어 직원의 입사 당시 기능 정도 및 입사 후 받은 교육 훈련 입증 자료 등)를 평소에 잘 정리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국에서의 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후(事後) 전략

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후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가. 공상행정기관에 의한 조사 및 처분

이는 앞에서 소개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및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약간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관할 공상행정기관은 부정당하게 취득된 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상업비밀이 기재된 문서와 자료의 반환, 상업비밀이 사용되어 생산된 제품의 처분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를 조정(調解)해 줄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나. 민사소송

이는 상업비밀을 침해한 당사자에 대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법원에

서 관련 가치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권리자가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신속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한 중국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국가의 법원에 가치분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장성(长城)자동차와 Fiat 자동차 사이의 2006년도 분쟁에 있어서 Fiat가 이태리 법원에 장성자동차의 정령(精灵)에 대한 EU 내에서의 선전, 광고,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가치분 신청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이를 받아낸 것은 좋은 사례이다.

다. 형사고소

이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 형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형사고소와 함께 중국 형사소송법의 '부대민사소송(附帶民事訴訟)' 제도를 활용하여 형사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①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증거수집 부담을 덜어주고, ② 형사소송이 종료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노동중재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재직 중 또는 이직한 직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노동중재를 거친 후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마치는 글

이상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는 민사, 형사 및 행정의 각 측면에서 비교적 완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무상 효율적인 집행제도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 전략보다는 사전적 전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성어에 '임전모창(临阵磨枪)'이라는 말이 있다. 전투에 임박하여 비로소 창을 갈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와 같이 임전모창하지 않고, 비오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기(未雨绸缪)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2011. 8 |

2008허3407 특허법원 판결 사례로 본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적용 관련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고찰

본 판례의 활용이나 향후 법개정의 필요를 고려한 증빙으로 실무 사례와 특허법원의 특허거절결정 관련 판례(특허청 심사 심판 단계에서 거절결정된 사안이 특허법원에서 역전된 Case로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임)를 추가하여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법적 의미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재 흥

현 위니아만도(주) 기획운영팀장 수석연구원
(주)만도 지적재산 과장
충남대학교 특허법무 전공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卒)

2008.8.28. 선고 특허법원 2008허3407 판결 사례는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적용에 있어서 자기공지가 수차례 실행된 경우 입증의 곤란성을 해결한 과제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여진다. 수차례 자기공지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출원인의 편의와 절차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인 점과 향후 법개정을 통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판례의 활용이나 향후 법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증빙으로 실무 사례와 특허법원의 특허거절결정 관련 판례(특허청 심사 심판 단계에서 거절결정된 사안이 특허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로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

한 건임)를 살펴봄으로써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보호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출원 시점과 정확하고 넓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이용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교훈으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한 실천 행동력과 투자의 필요성을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 사건의 내용, 관련법규, 디자인 제도, 심사 판결례 및 이 건 판례에 관한 의견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사건의 내용

(1) 당사자

구분	당사자명	주문	비고
원고	한병구, 이은영	원고청구 기각	심판원
피고	홍준표	(심결 취소에 관한 판결)	07당534

(2) 판결선고 2008. 8. 28.

(3) 판단내용

1)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내용

- ①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6. 5. 3. / 2006. 9. 12. / 제 425424호
- ②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 ③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이고,¹⁾ 음향기기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음의 출력 레벨이 표시되는 부분임.
- ④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디자인은, 반원형을 이루는 막대그래프 모양과 반원형 띠 모양을 상하로 배치 원형구도를 이루도록 하고 상단의 공간부에 검모양의 막대그래프를 부채꼴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이를 좌·우측에 쌍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음의 출력시 광원에 의해 음의 출력레벨이 생동감과 화려한 미감이 표출되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⑤ 도면 :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라고 한다)

2) 최초 공지디자인과 그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피고는 2005. 11. 2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디자인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게시한 바가 있는데(이하 위 공지된 디자인을 '최초공지디자인' 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6. 5.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공지디자인에 의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이하 위 행위를 '공지예외주장' 이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최초공지디자인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되었다.

3)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내용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모두 그 권리자가 피고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비교대상디자인 1

- 출원일 / 출원공개일 : 2005. 12. 1. / 2006. 4. 14.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이고, 음향기기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음의 출력레벨이 표시되는 부분임.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디자인은, 반원형을 이루는 막대그래프 모양과 반원형 띠 모양을 상하로 배치 원형구도를 이루도록 하고 상단의 공간부에 검모양의 막대그래프를 부채꼴 모양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이를 좌·우측에 쌍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음의 출력시 광원에 의해 음의 출력레벨이 생동감과 화려한 미감이 표출되도록 한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도면 :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②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2는 '월간 카오디오' 라는 이름의 간행물 2006년 1월호에 실린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③ 비교대상디자인 3

비교대상디자인 3은 '월간 카오디오' 라는 이름의 간행물 2006년 2월호에 실린 '음향기레벨미터용 레벨표시판'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2 제3항 기재와 같다.

1) 재질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재질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범위 해석과 미치는 영향과 판례의 태도는 정립된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사건으로는 디자인의 물품이 관련 업계에서 어떤 특징과 판매형태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물품성 측면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4)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① 원고들은 2007. 3.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2007당534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② 특허심판원은 2008. 2. 28. 피고가 최초공지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6. 5. 3. 이와 동일한 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최초공지디자인에 대한 공지에 외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공지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디자인들로서 최초공지디자인의 공지일 이후에 공지된 디자인들인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최초공지디자인에 대해서만 공지에외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대해서는 공지에외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동일한 디자인들로서 공지에외주장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규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지에외주장을 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8조)

그런데 디자인의 출원 당시 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차례 공지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기간 내 공지에외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최초분 이후에 공지된 동일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공지에외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디자인의 공지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어떤 시점의 한정적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최초의 시점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공지에외주장을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지되는 디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여러 번 공지된 디자인들 중 최초로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공지에외주장을 하면 그 나머지 공지된 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최초공지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들이 모두 피고의 디자인들이고, 한편 이들 디자인이 모두 동일한 디자인임은 원고들이 자인²⁾하고 있다. (2008. 8. 14. 제1차 변론기일)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최초공지디자인에 대해서 공지에외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최초공지디자인의 공지일 이후에 공지된 피고의 동일한 디자인들인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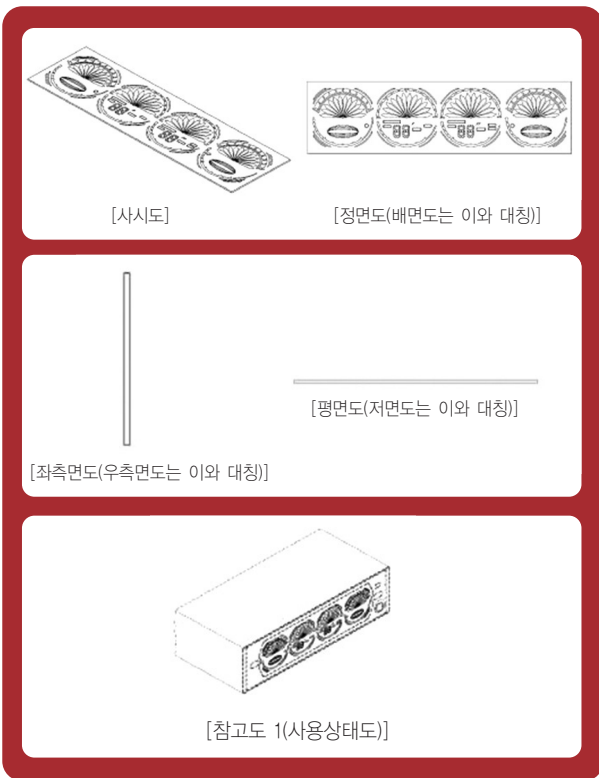
2)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 다만, 소송절차상의 확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증거수집 등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의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자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성질의 것이라 보여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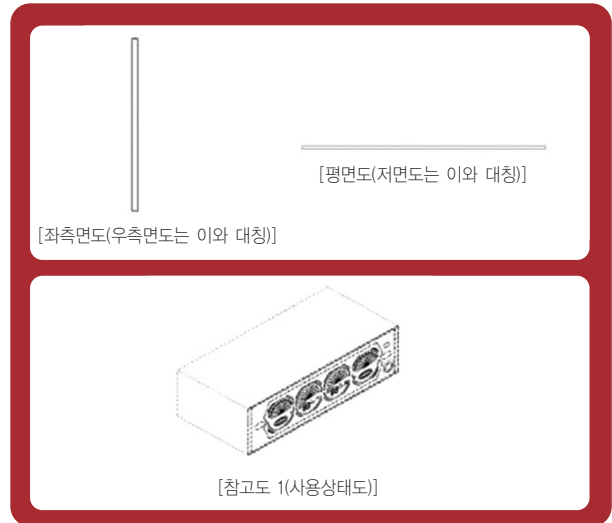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도면 또는 사진

1. 비교대상디자인 1의 도면



2. 비교대상디자인 2의 사진



3. 비교대상디자인 3의 사진





[정면사진 2]

2. 디자인보호법 관련 법규정

(1)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3) 2001.2.3.일자 출원공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의 공지예외 적용과는 관계없는 조항이다. 제 23조의 6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4)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제도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2008.4.5.일자 발행 임병웅 저 이지 특허법 제7판을 주로 참조하였고, 육법사 지적소유권법, 코어 디자인법을 보충적으로 검토 반영하였다. 제도의 취지 등은 특허법원 2010.7.16. 선고 2009허9518 (특허 거절결정) 판례를 참조하였다.

5) 노태정 김병진, 디자인 보호법, p208, 승계인은 신규성이 상실된 이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³⁾

(2)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건 판례와 관련된 디자인 제도⁴⁾

(1) 의의

공지예외 적용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 8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면 그 디자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하에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강학상 '신규성 의제' 라고 한다.



(2) 취지

디자인등록 출원한 고안이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창작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디자인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부여한다는 디자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공지예외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 2항 규정의 취지는 디자인등록에 의한 디자인 보호의 목적이 국가산업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하여(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디자인 까지도 디자인권자에게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디자인보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디자인의 진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의 두 가지 공익적 요충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디자인 고안 시점으로부터 출원시점까지 사이에 어떤 이유론든 디자인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고안자 등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창작자로서 하여금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꺼리게 함으로써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학회에서의 발표 등에 의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조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디자인 연구 활동 활성화 및 디자인 개발 촉진에 악영향을 미쳐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오히려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자발적인 디자인 공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공개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내용

1) 요건

① 주체적 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창작자 또는 정당 승계인의 디자인이어야 한다. 공유인 경우 1인이 절차 진행을 하여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⁵⁾

② 시기적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심사절차의 안정 및 제3자에 대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복수개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2007년 개정법은 유사디자인을 단독출원으로 보정시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유사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이어야 한다.

③ 객체적 요건

양디자인이 동일, 유사 또는 비유사한지의 여부 등 양디자인의 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실익이 있다.⁶⁾

2) 절차

출원서에 그 취지와 함께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자,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장소 또는 간행물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증명서류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3) 효과

① 요건 구비시

신규성예외주장의 대상이 된 공지디자인은 신규성의제 주장을 수반한 디자인등록 출원의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기가 공지시킨 디자인을 인용참증으로 신규성 및 창작성 위반으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단, 출원일이 소급되는 선원주의의 예외규정은 아니다.

② 요건 흠결시

신규성의제불인정예고통지와 함께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의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의제불인정통지후 신규성의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출원디자인을 심사한다.⁷⁾ 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우선권 주장과의 관계

파리협약상의 우선권은 동맹 제1국의 출원과 동맹 제2국의 출원사이에만 인정되는 절차상의 예외규정이므로 동맹 제1국 출원일 이전의 행위나 동맹 제2국 출원일 이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일로부터 6월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일로 부터 6월내에 우선권주장 및 신규성의제 출원할 것을 요한다.

(4) 관련 심사 · 심판 · 판결례 소개

1) 출원 실무사례 (공지예외 주장 사례)⁸⁾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거절이유 없이 등록됨 (특별한 심사 이슈 없음)
[공개형태]	제품출시	
[공개일자]	2010.03.19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카탈로그 공지	
[공개일자]	2010.04.30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관련 판례 (특허법원 2010.7.16. 선고 2009허9518 _ 거절결정(특))⁹⁾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출원일 다음날 “공지예외적 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예외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된 출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자기 공지예외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는 반드시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되어야만 하므로, 출원인이 위 기재를 누락한 출원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보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일 다음날 출원인이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 공지예외의 공지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다툼 사례이다.

재판부¹⁰⁾는 기공지예외의 공지예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자기 공지예외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출원이 자기 공지예외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한 출원인에게 자기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정한 이상,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③ 반면, 위와 같은 보정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는 절차상의 형식적인 하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정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당해 출원발명의 실제적인 내용과는 관계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④ 보정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하여금, 특허출원 전에도 자유로이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조기 공개에 의하여 사회 전체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와 '자기 공지 행위에 대한 제한 철폐와 절차 간소화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에 의한 발명자 보호의 취지를 확대하고 있는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특허법 제30조 제2항이 밝히도록 하고 있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취지'는 그 성질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제 심사가 행해지는 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 등의 특허 요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때에 비로소 필요한 사항일 뿐, 출원시부터 반드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성질의 사항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⑥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만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할 것'의 의미를 '반드시 그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출원서에 기재하여야만 하고 출원 이후 보정으로 이를 기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점, ⑦ 더구나, 특허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상 요건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 소정의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 취지는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시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나, 비록 자기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시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자기 공지 행위에 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발명의 출원 전 공지가 자기 공지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¹¹⁾(예를 들어,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인 발명자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자신의 연구결과가 추후 연구결과보고서로 작성되어 배포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후 연구결과보고서가 간행물로서 제작되어 배포되는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포 사실에 대하여 통보도 받지 못한 사안인 경우에도 발명자가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의 배포에 의한 발명의 내용 공개가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은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실수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출원서에 누락한 채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

- 6) 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 7) 신규성의제 주장을 한 경우, 이의 요건 충족시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거절결정 될 개연성이 상당할 것이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
- 8) 이 건은 기업 실무에서 대표적으로 현행법 규정에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만에 하나의 거절결정을 우려하여 출원전에 공지된 모든 사례를 증거로 제시한 사례이다. 출원인의 경우 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출원 Timing을 실기한 경우에 대한 처방으로 활용된 Case이다.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디원 2010-20940)
- 9) 이 건 판례와 동일한 유형의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된 he 판례는 없는 것 같다. (2011.4.6.헌재 기준으로 국내 공개된 DB 조사결과) 다만, 2009허9518 특허법원 판결은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하여 시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소개한다. 즉, 출원시 공지예외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절차의 보정을 인정한 경우로 특허청 심사관과 심판관의 입장과 상이한 태도를 보인 특허법원의 판결인 점은 본 공지예외 적용에 관한 입법 정책 관점에서 절차의 보정에 관한 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보여진다. 본 판결은 불복 상고하여 대법원 2010 후2353 판결 (2011.6.9. 파기환송됨)로 이 건의 경우 공지예외 적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출원시 공지예외의 주장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할 것이다.
- 10) 판결문의 구체적 판단사유를 각색없이 그대로 기술하였다. 자기공지에 관한 입법취지 등 개념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11) 직무발명인 경우에 특허 출원의뢰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학회에 발표하는 등 발명자는 출원이 완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겠다. 물론 특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을 반드시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㉔ 나아가, 특허법은 물론이고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 기재의 노력을 보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 관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 공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인 2006. 6. 21. 특허출원을 하였고, 출원일 다음날로서 역시 위 6개월 내에 속하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과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자기 공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원고가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특허청 심사관은 위 서류의 제출로써 원고가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출원서에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원하였다가, 출원일 다음날 특허청에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노력을 출원 이후 적법하게 보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였다.

4. 이 건 판결에 관한 의견 및 디자인 보호에 관한 운영실무 검토

(1) 이 건 판례에 관한 의견

자기공지 예외주장의 입증 곤란성이 있으므로 최선책은 어떠한 유형이든지 공지 이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증의 곤란성을 극복한 본 사례(판례)가 비록 특허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공지에 관한 사유가 이중 삼중으로 입증할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대법원 판례로 정립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이고 입법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이 출원 이전에 자기공지에 의한 것이 명백한 제품출시, Catalog, 전시회 출품 등 일련의 동일성이 있는 자기 공지에 대해서는 최초 공지된 증명서류 제출만으로 절차의 완결을 도모하는 입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자기공지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창작성 판단시 주체(人)의 동일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이는 Case별 실질적인 창작자와 출원인 및 정당한 승계인인지 여부를 별도로 따져 해결할 문제라 보여진다.

(2) 디자인 보호에 관한 운영실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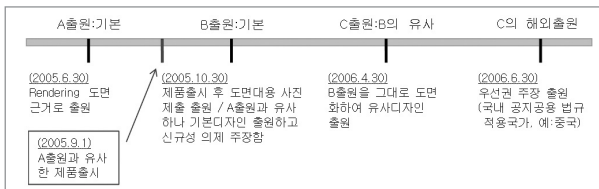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특허법 등 타 지적재산권법과 상이한 제도 중 하나인 유사디자인 제도는 침해문제, 출원 시 보호범위의 명확화 등 위하여 실무적으로 활용빈도가 높은 제도이다.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게 될 경우 중국에는 디자인 유사성 문제로 쟁점이 귀결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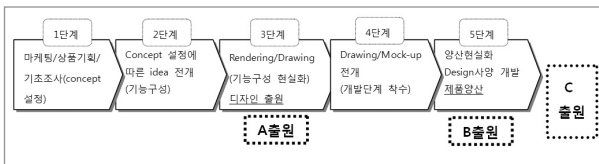
판단자의 관점에 따라 심미감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디자인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출원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 탄생시까지의 문제점과 보호 방법에 관하여 어떤 조치가 적절한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신규성 의제 주장에 관한 사례를 확인하여 디자인 보호에 있어 차질없는 대응을 고려해 보았다.

2) 사례 제시 (출원인 동일)



3) 바람직한 출원전략 검토¹²⁾

① 디자인 개발 Process (개발)



② A출원 Timing의 적절성 검토

상기 디자인 개발 Process를 볼 때 Concept 설정에 따른 idea 전개 과정인 2단계 수준에서 Sketch 등 개념도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제품에 합당하거나 의사결정이 완료된 수준이므로 선원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때늦은 시기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단계에서 출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출원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출원인의 현실에 있어서는 3단계에서 기본출원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관리와 비용문제가 없다면 2단계 수준에서 다량의 관련 디자인을 출원해 두는 것도 디자인보호망 확보 차원에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③ B출원은 제품 출시 후 실물을 사진촬영하여 A와 유사하다고 보여지지만 B출원을 기본디자인으로 하고, 신규성의제 주장으로 출원을 하는 것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출원단계에서 출원인 입장에서는 기본디자인 출원을 지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A의 출원은 색채가 없는 형태일 뿐아니라 배면도, 저면도 등 중요도가 다소 낮은 부분의 모양과 형상은 B출원과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경우라고 가정한다면(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B의 제품사진 촬영 출원은 기본디자인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의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B의 기본디자인으로의 출원은 출원인 입장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만일 심사결과 A의 유사로 판단이 되면 그 시점에서 출원변경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④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A,B,C가 하나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Design이고 국내법상 유사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면, A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출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명확한 보호를 위한 조치로 C출원을 한 경우 제품출시 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 출시 전에 원하는 국가의 출원일을 부여받는 것이 다양한 각국 법제를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 판단된다. 유사디자인 제도가 없는 국가, 국내 공지공용이 아니면 등록을 허용하는 국가(중국) 등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출원은 많은 비용 그리고 사업진출의 가능성 고려 등 출원인의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A출원 시점에서 해외출원을 실시한 경우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출시 전 출원을 목표로 추진하되, 국내 공지공용 주의를 취하는 국가에는 C출원 후 C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주장 출원하는 것도 디자인보호의 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다. 2011. 8 |

12)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인내심과 기본지식이 요구되며, 작업의 수행자는 작업에 관한 사명감이 없으면 흘러 보내버릴 여지도 있다. Risk도 클 뿐 아니라 무형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정보의 한계영역일지 모른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력을 키우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실행력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요망된다. 일정 연구원 수 보유의 경우 의 목적으로 지재권전문가 또는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사후적으로 법으로 규율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식 + 실행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다.

특허청구범위 해석(Claim Construction)

미국판례연구모임 “지식공감” *)

7 청구항 용어들은 일관되게 해석된다(Claim Terms Are Interpreted Consistently)

동일한 특허의 다른 청구항에서 사용된 청구항 용어는 분쟁이 되는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다. 청구항 용어들은 주어진 특허를 통해 일관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법원은 동일한 특허에서 복수의 청구항들에서 나타나는 청구항 용어들을 동일한 용어의 의미로 해석했다.

청구항 해석시 법원은 청구항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동일한 용어들은 명세서나 출원경과로부터 용어들이 청구항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동일한 의미로 주어진 것이라는 간주에서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동일한 용어가 다른 청구항 문맥에

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에 청구의 하나 이상의 정의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의 용어가 독자에게 용어의 다른 사용을 고지할 만큼 충분하고 그 사용들이 특허 파일에 참조된 공중에 의해 사용가능한 문서들로부터 명백한 한 동일한 방법으로 외관한 동일한 용어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적절하다.

8 청구항 차이의 원칙-청구항들은 다른 청구항들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Claim Differentiation-Claims Ought to Be Construed So as Not to Render Other Claims Meaningless)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다른 청구항들의 의미들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항 해석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개념은 다른 의미를 갖는 청구항들은 전혀 다른 발명을 커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청구항들을 서로 다른 청구항으로 읽히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다. 청구항이 오로지 한가지의 해석만 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면, 해석의 유사성은 용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부분의 솔직 간결한 시나리오에서는, 청구항의 차이는 독립항과 종속항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독립항의 해석은 종속항에 의하여 추가된 제한사항을 감안하여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독립항은 종속항의 중복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속항보다도 넓은 범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음향반사장치(baffles)”를 인용한 독립항과 상기 음향반사장치는 “강철판을 뚫을 수 있는 총알과 같은 발사체의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각도로 설치한 패널부들로 구성된”(oriented with the panel sections disposed at angles for deflecting projectiles such as bullets able to penetrate the steel plates,)이란 한정어구를 가지고 있는 종속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독립항에서의 “음향반사장치”라는 용어는 그러한 한정어구를 이미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간주할 것이다.¹⁹⁾

종속항의 한정사항이 독립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그 한정사항이 청구항들 사이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강하게 나타난다. 청구항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은, 독립항-종속항 시나리오에서의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CAFC는 법 규정(35 U.S.C. § 112, 14) 자체가 종속항은 독립항에서 인용된 것들에 대한 한정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CAFC는, 종속항의 추가적인 한정사항을 독립항 안으로 읽어 들어오는 것은, 단지 추가적인 한정사항을 여분으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아예 그 종속항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독립항-종속항 시나리오 외에도, 청구항의 차이는 특허에서의 모든 청구항은 서로 다른 범위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모든 한정사항이 다른 청구항의 관련부분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하나의 한정사항만은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분쟁이 되는 한정사항이 청구항들 사이에서의 차이만을 나타낼 경우에는 청구항 용어들은 한정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다른 청구항은 정확하게 동일방식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CAFC는 “청구항 차이의 원칙(claim differentiation)”은 불변의 규정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인 일종의 안내서 성격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어 ‘청구항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영역 내에서 다른 발명의 주제(subject matter)를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 정확하게 동일한 발명의 주제를 규정하기 위하여도 다른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청구항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발명의 주제를 규정할 수도 있다.

두개의 독립항이 분쟁의 대상일 경우에, ‘청구항 차이의 원칙’을 지배하는 다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로, 청구항 차이의 원칙은 청구항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 하이스트국제특허의 김은구 변리사, 엘지전자의 배동석 부장, 제일모직의 서영호 변리사, Intellectual Discovery의 박성호 변리사, SKT의 윤찬호 변리사, 미국 로펌 MWE의 이호상 변리사(미국변호사)가 참여하는 미국판례연구모임 “지식공감”은 미국의 주요판례들을 연구하여 국내에 발표하는 연구모임입니다. 미국판례연구모임 “지식공감”의 첫 번째 연구주제인 미국 청구항 해석을 정리하여 본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판례연구모임 “지식공감”은 미국 청구항 해석을 정리하면서 저자 Horwitz의 “Patent Litigation: Procedure & Tactics” 중 CHAPTER 6 Claim Construction-Markman Hearings 을 참조하였습니다.
19)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25 (Fed. Cir. 2005).

독립항에서 사용된 여분의 추가적인 또는 다른 언어들을 타당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 둘째로는, 청구항 차이의 원칙은 “청구항들의 정확한 범위를 넘어서도록 넓게 해석할 수 없다.”이다.²⁰⁾

청구항이 “means plus function”식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 6항 (35 U.S.C. § 112.6) 에서 규정하듯이, 명세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두개의 청구항의 해석상의 범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 할지라도 명세서와 일치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제112조 6항에 의하여 규정된 청구항 해석은 앞에서 설명된 청구항의 차이의 “안내서”로서의 기능보다는 우선시된다.

9

특허청구범위는, 가능한, 유효함을 유지하도록 해석된다 (Claims Are Construed, if Possible, to Sustain Their Validity)

청구항은 가능한 유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CAFC가 이 격언을 확인해주는 반면에, 이러한 원칙을 넓게 해석되도록 적용하지는 않는다. 유효성 분석은 청구항 해석의 정규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격언은, CAFC가 청구항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적용한 이후에도, 청구항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결론을 내린 판례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청구항 해석이 온전한 청구항 해석 원칙들에 입각하여 “실행가능” 하고, 청구항의 언어들을 보정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는 경우에, 유효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해석가능하다.

만약, 청구항 용어가 애매모호하지 않다면, 일청구항이 무효되지 않으면서도, 타청구항이 무효가 되도록 해석하는 식의 청구항 해석이 가능할 지에 대하여는 생각할 필요

도 없다.

CAFC는 이 역사적인 이 격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¹⁾

판례, IriKlein v. Russell, 86 U.S.(19 Wall.) 433, 466, 22 L. Ed. 116 (1873) 에서, 특허침해자는 좀 더 넓은 해석을 주장하고, 동시에 재등록(reissued patent) 특허의 소유권자는 좁은 해석을 주장했다. 해당 법원은 재등록 특허는 원등록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법규정의 요건이라고 판시했다. 미국특허법 제251조 (35 USC 251)하에서 승인된 재등록은 좀 더 넓은 해석 하에서는 부적절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특허청장이 그의 의무를 다했고, 그 결과 무효화될 특허를 등록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여러 이유들 중, 바로 이 이유로, 법원은 “특허권자에 의해 주장된 특허와 해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되는 청구항 언어를 해석했고”, 비로소 특허권자가 사용한 언어와 일관되게 해석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 판례에서의 이 원칙의 적용은 미국특허청이 하나의 청구항의 해석이 그 청구항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미국특허청이 청구항 용어를 적절하게 해석을 했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등록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추론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청구항이 넓게도 해석할 수 있고, 좁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넓은 해석은 특허법 제 112조 1항 하에서의 발명의 가능성 요건관련 질문들을 양산하는 한편, 좁은 해석은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의하

여 명백하게 지지된다면, 법원은 두 가지의 청구항 해석 중, 좁은 해석을 채택할 것이다.²²⁾

10 청구항이 모호할 때 법원은 축소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Narrow Construction Favored over Broad Construction)

청구항이 모호한 경우, 즉 청구항 용어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일단 명세서 및 출원 경과를 참작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항을 좁게 해석한다.²³⁾ 특히나 확대 해석 시에 enablement 관점의 무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 축소 해석될 여지가 높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당업자 관점에서 청구항 자체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명세서의 한정사항을 청구항 해석에 포함시켜 축소 해석하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항 해석의 기본 원칙은 명세서, 출원경과 등 내적 증거와 기타 외적 증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모호성에 대한 축소 해석은 최후적 판단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1 전제부(Preamble)를 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Preamble-When Limiting)

청구항 전제부가 발명의 목적/용도에 대한 단순 설명인지 아니면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확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문 제된 특허에 따라 발명의 실체와 발명자/권리자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²⁵⁾²⁶⁾

전제부를 청구항 한정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i) 전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의 한정사항을 해석함에 있어 전제부에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경우²⁷⁾, ii) 전제부에

구성에 대한 한정(structural limitation)이 포함된 경우²⁸⁾, iii) OA 단계에서 전제부 용어에 의지하여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등 전제부가 발명의 필수적/정의적 측면(necessary and defining aspect of the invention)을 제시하는 경우(전제부에 ‘portable computer’ 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명세서 및 출원 경과를 참작하여 portability를 청구항 한정으로 인정한 사례²⁹⁾)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청구항 본문에 발명의 구성이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고 전제부는 단순히 발명의 용도만 설명하는 것이 라면 청구항 해석시에 전제부는 큰 의미가 없다.³⁰⁾

한편 Jepson Type 청구항은 전제부가 발명을 특정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³¹⁾

이와 같이 전제부 해석은 자주 쟁점이 되면서도 case별 특이성이 많지만, 지금까지 CAFC에서 판단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한정으로 인정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명세서 및 출원경과까지 감안하여 전제부의 기재가 “necessary and defining aspect of

20) Fantasy Sports Props., Inc. v. SportsLine.com, Inc., 287 F.3d 1108, 1115-1116 (Fed.Cir. 2002)
 21) Phillips v. AWH Corp., 415 F.3d 1303, 1328 (Fed. Cir. 2005).
 22) Athletic Alternatives v. Prince Mfg., 73 F.3d 1573, 1581 (Fed. Cir. 1996); Ethicon Endoo-Surgery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93 F.3d 1572, 1581 (Fed. Cir. 1996).
 23) Ethicon Endo-Surgery,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93 F.3d 1572 (Fed. Cir. 1996)
 24) Athletic Alternatives v. Prince Mfg., 73 F.3d 1573 (Fed. Cir. 1996)
 25) Catalina Mktg. Int'l v. Coolsa-vings.com, Inc., 289 F.3d 801,808 (Fed. Cir. 2002)
 26) Rowe v. Dror, 112 F.3d 473 (Fed. Cir. 1997)
 27)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182 F.3d 1298; 1305 (Fed. Cir. 1999); Diversitech Corp. v. Century Steps, Inc., 850 F.2d 675, 677-678 (Fed. Cir. 1988)
 28) Bell Communications Research v. Vitalink Communications Corp., 55 F.3d 615, 620 (Fed. Cir. 1995)
 29) On Demand Mach. Corp. v. Ingram Indus., 442 F.3d 1331, 1343 (Fed. Cir. 2006)
 30)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182 F.3d 1298; 1305 (Fed. Cir. 1999)
 31) Catalina Mktg. Int'l v. Coolsavings .com, Inc., 289 F.3d 801, 808 (Fed. Cir. 2002)

the inven-tion”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2 발명의 명칭은 청구항 해석에 고려되지 않는다(Title Given No Consideration in Claim Construction)

발명의 명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1999년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판례에 언급되어 있다. 이전에 발명의 명칭을 부분적으로나마 고려한 판례가 있지만, 이는 청구항, 명세서, 출원 경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청구항 해석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논거 중 하나로 설명된 것에 불과하다.

M.P.E.P.(미국특허청 심사지침서) §606.01을 보더라도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는 목적은 특허를 분류하고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심사관이 명칭을 수정하도록 출원인에게 요청할 수도 있으며, 명칭을 보정하였다고 해서 청구항 보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이 부여될 수는 없다.

13 청구항은 침해 물품(Accused Product)을 직접 참조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침해 물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할 수는 있다(Claims Are Construed Without Reference to Accused Product-But May Be Construed with Knowledge of Accused Product)

침해 물품을 직접 참조하여 청구항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다.³²⁾ 즉 청구항 해석시 침해 물품은 외적 증거(Extrinsic Evidence)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침해 물품에 맞춰 청구항 해석을 조정함으로써 침해/비침해를 예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청구항 해석의 쟁점은 침해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비로소 도출되기 때문에, 특정 용어(term)에 대한 해석

이 필요한지 혹은 평의한 의미(plain meaning)를 적용해도 충분하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침해 물품에 대한 지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³³⁾

14 청구항 해석은 무효성 및 정책적인 고려(policy consideration)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Claims Construed Independent of Validity and Policy Considerations)

청구항 해석 이슈와 침해/무효 이슈는 구분이 필요하고, 청구항 해석 단계에서는 무효, 침해, 발명자 이슈(improper inventorship)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³⁴⁾³⁵⁾ 또한 청구항 해석은 당업자 관점에서 청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지 공평의 관점에서 또는 제도나 법적인 고려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단계들의 순서도 한정이 될 수 있다(Method Claims-Order of Steps May Be Limiting)

방법의 각 단계가 수행되는 순서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석상 각 단계를 순서대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청구항 구성의 논리적인 측면 또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순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명세서에 순서의 필요성이 직접 설명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³⁶⁾ 이러한 두 테스트에서 모두 순차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비로소 축소 해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청구항이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순차성이 의미를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특히 순차성이 의미를 갖는 경우를 바람직한 실시예로 설명하면서 종속항에 반영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Product-by-process 청구항에서 Process는 한정사항이다 (Product-by-process Claims-Process Is Limiting)

CAFC는 '09년 Abbott Labs. V. Sandoz, Inc. 사건의 전원합의체(en-banc) 판결을 통해 침해 판단에 있어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Process가 한정사항임을 명확히 밝혔다.³⁷⁾ Abbott Labs 사건 이전에는 사건 별로 한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Product-by-process 청구항에 대한 미국특허청 심사지침을 보면(M.P.E.P §2113), 특허성에 대한 판단은 Product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법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항의 오류를 교정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Court May “Correct” Claim in Limited Circumstances)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특허청을 통한 정정 절차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명백하고 사소한 자구적(typographical) 및 사무적(clerical)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한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i) 청구항 및 명세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교정이 합리적 분쟁의 여지가 없고, ii) 출원 경과를 보더라도 청구항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청구항의 오류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법원이



오류 수정에 부정적인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Chef Am., Inc. v. Lamb-Weston, Inc.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청구항의 “heating the resulting batter-coated dough to a temperature in the range of about 400°F to 850°F.”에서 “to”가 “at”의 오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 해석하지 않았고 CAFC도 이를 지지한 바 있다.³⁹⁾

IV. Means-Plus-Function 청구항의 해석

Means-Plus-Function 청구항은 순수하게 기능적 한정만을 포함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structure)이 제시되지 않은 청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Means-Plus-Function 청구항의 해석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⁴⁰⁾

- 1) 청구항 기재(claim language)가 미국 특허법(35 U.S.C.) 112조 6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32) NeoMagic Coq. v. Trident Microsystems, Inc., 287 F.3d 1062, 1074 (Fed. Cir. 2002); SRI Int'l v. Matsushita Elec. Corp., 775 F.2d 1107, 1118 (Fed. Cir. 1985) (en banc)
 33) Wilson Sporting Goods Co. v. Hillerieh & Bradsby Co., 442 F.3d 1322, 1330 (Fed. Cir. 2006)
 34)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Inc., 52 F.3d 967, 986 (Fed. Cir. 1995), aff'd, 517 U.S.370, 116 S. Ct. 1384, 134 L. Ed. 2d 577 (1996)
 35)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rp., 403 F.3d 1331, 1340 (Fed. Cir. 2005)
 36) Interactive Gift Express, Inc. v. Compuserve Inc., 256 F.3d 1323, 1343 (Fed. Cir. 2000)
 37) Abbott Labs. v. Sandoz, Inc., 566 F.3d 1282, 1290-1296 (Fed. Cir. 2009)
 38) Novo Indus., L.P. v. Micro Molds Corp., 350 F.3d 1348, 1354 (Fed. Cir. 2003)
 39) Chef Am., Inc. v. Lamb-Weston, Inc., 358 F.3d 1371, 1374 (Fed. Cir. 2004)
 40) Biomedino, LLC v. Waters Techs. Corp., 490 F.3d 946, 950 (Fed. Cir. 2007)

- 2)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들을 식별한다.
- 3) 명세서에서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 및 균등물을 판단한다.

1 Means-Plus-Function 청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Triggering Means-Plus-Function Treatment)

일단 청구항 구성요소로 “means”를 기재하면 Means-Plus-Func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mechanism”, “element”, “device” 등의 일반 용어 (generic term)는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일반 용어에 수식어가 추가될 경우 구성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⁴¹⁾ 이와 같이 Means-Plus-Function 청구항 여부는 청구항에 물리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청구항 용어들이 당업자 입장에서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⁴²⁾

한편 청구항에 “mean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Means-Plus-Function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⁴³⁾

2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의 식별 (Construing the Claimed Function)

청구항이 Means-Plus-Function 청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순서로 청구항의 기능식 기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청구항의 기재된 기능은 청구항 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을 참조해서는 안된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확인하는 작업과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에 종속되어 불필요한 기능까지 청구항 해석에 반영될 소지가 있다.⁴⁴⁾⁴⁵⁾

3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의 판단(Determining Corresponding Structure)

Means-Plus-Function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확인한 이후에는 각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세서에서 찾는다. 이 때 각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이외의 구성은 해석에서 배제시켜야 한다.⁴⁶⁾⁴⁷⁾ 한편 청구항의 기능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의 무효사유(indefiniteness)가 될 수 있다.⁴⁸⁾

소프트웨어와 같이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발명에 있어서 는 기능식 기재에 대응하는 구성을 단순히 컴퓨터에서 수행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⁴⁹⁾ 2011. 8 |

41) Mass. Inst. of Tech. v. Abacus Software, 462 F.3d 1344, 1354 (Fed. Cir. 2006)

42) Personalized Media Commun., L.L.C. v. ITC, 161 F.3d 696, 705 (Fed. Cir. 1998)

43) Waits v. XL Sys., 232 F.3d 877, 880 (Fed. Cir. 2000)

44) LG Elecs., Inc. v. Bizcom Elecs., Inc., 453 F.3d 1364, 1379 (Fed. Cir. 2006), rev'd,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s., Inc., 128 S. Ct. 2109, 170 L. Ed. 2d 996 (2008)

45) JWV Enters. v. InteractAccessories, Inc., 424 F.3d 1324, 1331 (Fed. Cir. 2009)

46) B. Braun Med., Inc. v. Abbott Labs., 124 F.3d 1419, 1424 (Fed. Cir. 1997)

47) Northrop Grumman Corp. v. Intel Corp., 325 F.3d 1346, 1352 (Fed. Cir. 2003)

48) In re Donaldson Co., 16 F.3d 1189, 1195 (Fed. Cir. 1994) (en banc)

49) Aristocrat Techs. Austl Pty, Ltd. v. In! Game Tech., 521 F.3d 1328, 1333 (Fed. Cir., 2008)

IP

Column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 클러스터 성공사례

미국 내에서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UCSD의 Vonliebig Center의 센터장을 인터뷰하고, 미국 대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파악하며,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환경을 파악,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환경에 적합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엄정한 변호사
 현)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미특허법인
 한국발명진흥회
 인하대, 인천대, 건국대 지식재산권 전임강사
 저서 특허법에센스(2007), 조문별 특허판례분석(2010)

클러스터란 무엇인가?

최근 클러스터(Cluster)란 용어가 신문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정 지역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서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한다. 혁신이 중요한 지식기반 시대에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클러스터를 배경으로 유럽 이동통신기술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북경시내의 중관춘 지역을 '중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 위주의 발전모델이 많은 약점을 노출하였고,

구 분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공동비전 및 목표	• 없음	• 있음
입주기업 연관성	• 낮음 • 경쟁 혹은 무관심	• 높음 • 경쟁과 협력
입주요인	• 낮은 지가/입주혜택 • 유형의 인프라 공용	• 신지식 창출/사업기회 • 무형의 지식공유(네트워크 참여)
운영관리자 관심	• 분양/임대 • 하드 인프라 관리	• 네트워킹 지원 • 기업지원서비스
조성기관	• 단기(부지조성후 분양)	• 장기(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사례	• 울산공업단지 • 마산수출자유지역 • 외국인 전용단지	• 실리콘 벨리 •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등

그림 1 - 산업공단지 클러스터의 비교



그림 2 - 샌디에고는 미국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벤처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기업의 효율성과 벤처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선진기업의 공세와 중국의 추격에 대항할 수 있는 산업발전모델로 꼽히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 모델은 위 표¹⁾에서 보듯이 종래의 산업단지 모델과는 시작부터 다른 모델이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체들은 공동의 비전이 없이 낮은 지가와 입주혜택을 위해서 단지에 입주하는데 비해, ‘클러스터’에 CONNECT 되고자 하는 주체들은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핵심이 되는 연구소, 대학과 네트워킹을 통해 최첨단의 연구결과물들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모델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을 중심으로 한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은 현재 클러스터 경쟁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별 클러스터들을 선별하여 소수 정예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실리콘 벨리라는 대표적인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이른바 IT 혁명을 주도한바 있으며, 1980년대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는 각각 시스타(Kista) 사이언스 파크 및 올루(Oulu) 테크노파크라는 IT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특히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정부 주도하에 경제 특구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림 3 - 관광, 군수산업 위주였던 샌디에고를 변화시킨 것은 하이테크 신산업 위주의 클러스터 정책이다.

는 물론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 섹터를 선정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클러스터화시키는 ‘SABV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샌디에고의 환경과 산업

샌디에고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위치한 면적 1만 제곱킬로미터의 카운티로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크기에 해당한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동쪽으로는 앤자보레고 사막이 있으며, 그 사이로 주요 도시와 기업들이 자리 잡은 긴 회랑 형태의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있다. 샌디에고는 연중 맑고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준다.

샌디에고는 산업 및 경제 측면에서 매우 발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신규 고용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2.5%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미국 평균 4.7%에 크게 못 미치는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통신, 군수, 관광 및 하이테크 신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는데, 시스코, 하니웰, 퀄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

1) 인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뉴스 (2003)

계적 기업 35개의 본사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샌디에고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 하나는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환경이다. 샌디에고의 주요 산업인 관광 및 레저산업은 온화한 기후와 태평양에 접한 지리적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 해군의 존재이다. 해군 예산을 바탕으로 항공기 제작 및 통신, 기계 부문의 하이테크 사업체들이 번성했고, 이들은 통신 및 IT 부문 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에 위치한 우수한 생명과학 연구기관들의 존재이다. 스크립스 연구소와 솔크 연구소는 각각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연구기관이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CSD) 역시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튼튼하게 자라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신규기업의 창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클러스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산업의 클러스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하이 클러스터들을 인근으로 배출하고 있다.

UCSD 대학을 중심으로 한 UCSD CONNECT의 성공

샌디에고의 성공 요인으로는 우선 풍부한 자원을 들 수 있다. 금융자본은 물론 인적자원까지도 넘쳐난다. 공공부문에서의 자금 유입도 많다. 기타 솔크 연구소, 스크립스



그림 4 - 샌디에고 대학을 중심으로 IT, BT와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샌디에고시 전체의 산업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연구소 등 지역 내 공공연구소 및 노바티스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공동 연구자금도 풍부하다. 또한 고급 인력과 중·저급 노동력의 공급도 매우 원활하며, 이러한 인력의 공급체계가 대학별로 분업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급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같은 종합대학에서 공급되는 반면, 인근 멕시코에서 저렴한 현장 노동력이 공급된다.

각종 교류 모임과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업 간 신뢰를 형성하고 위험을 공유할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네트워크를 꼽는다면 단연 'UCSD 코넥트'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연구소 주도형인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샌디에고 대학(UCSD)의 중추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코넥트는 UCSD에서 개발된 수많은 핵심기술과 우수 인재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측면의 각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성공적인 클러스터에는 반드시 선도적인 리더와 비전 제시자가 있다.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는 대학·연구소 주도형의 신산업



그림 5 - UCSD의 고급 연구인력, UCSD 근교 전문대학(Collage)의 중급 연구인력, 인근 멕시코의 근로인력이 공급되어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배경이 되었다.

클러스터이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또는 연구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샌디에고에서는 이 역할을 UCSD가 담당해왔다. UCSD 외에도 인력양성, 연구개발, 벤처지원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기반이 튼튼하고 대학별로 역할 분담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 내 사업화 전문기관 - 폰 레이빅 센터(von Liebig Center)

그림 6 - UCSD 공과대학에 위치한 폰 레이빅 센터



필자는 센터장인 로시벨 오초아씨의 초대를 받아 2011년 6월 말경 UCSD의 폰 레이빅 센터를 방문하였다. 2001년 설립된 폰 레이빅 센터는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내 기술 사업화 기관'이다. 폰 레이빅 센터는 UCSD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대학기술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학기술 중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고, 라이선싱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발명자(교수, 연구원)와 상담하고, 적절한 조건에 샌디에고 소재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구자 사이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폰

레이빅 센터는 일반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역할을 넘어 UCSD CONNECT사업과 같은 클러스터 사업의 코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상용화단계 이전에 있는 기술들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폰 레이빅 센터의 경우, 6년간 200회 이상의 사업화 제안을 하고 70개 이상의 사업화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사업화 프로젝트들은 22개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 냈으며 16개의 기업을 창업시켰다. 이렇게 대학내 사업화기관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게된 폰 레이빅 센터에서는 16개의 기업을 통해 총 821억의 투자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2)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lydalai&logNo=20005968212&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



그림 7 - 본 레이빅 센터



그림 8
- 로시벨 오초아 센터장

교수들로 구성된 폰 레이빅 센터의 멘토들은 의료기계,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 걸쳐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400여 명이 넘는 UCSD의 학부졸업생 및 석박사 출신 창업자들이 폰 레이빅 센터의 멘토들과 연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이 올린 수익은 또다시 학교로 기부되어 다른 창업성공사례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다. 단순히 지식재산을 유통시키는 것에만 급급하면 클러스터 내부에 위치한 업체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UCSD는 기술거래와 관련한 20년 이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TLO - 대학사이에 '사업화 전문기관'인 폰 레이빅 센터를 수립하였고, 센터는 지난 6년간 위와 같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클러스터 내의 코어기관으로서 UCSD를 자리 잡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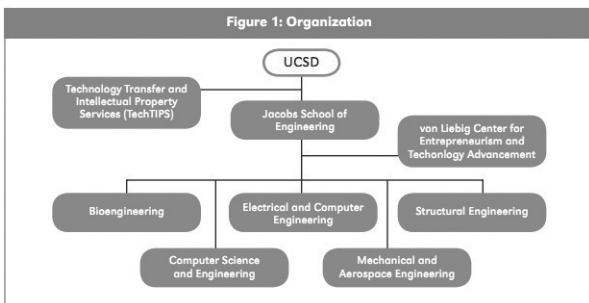


그림 9 - UCSD 공과대학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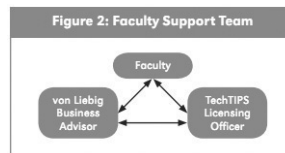


그림 10 - 연구실 지원 프로세스

폰 레이빅 센터에서는 UCSD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상업적 잠재력 분석

- 현재 연구 중인 과제에 대한 분석
- 경쟁기술들의 현재 상태 파악
- 잠재적인 상업적 수요 파악
- 시장초기의 수요를 분석

● 지식재산권 보호

- 기술이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기술이전조직과의 협업

● 비즈니스 모델 설계

- 최선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 :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중 전략선택
- 연구자들의 관심과 속성을 파악
- 기술이전조직과 클러스터 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수익모델 구상

● 잠재적 수요자 확정

- 연구자들과 협업하고 있는 기존 파트너 외에 추가적인 기술수요자를 모색
- 기술이전조직과 클러스터 조직과 협업 안내

●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 제안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 UCSD의 다른 지원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그림 11 - 기업들을 상대로 UCSD의 기술을 마케팅하고 있는 로시벨 오초아 센터장

●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 연구결과물의 생산계획 및 로드맵 수립
- 마케팅 심층분석
- 영업채널 확보
- 초기 운영방법 정의
- 펀딩계획 설계
-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조직과 협업)

● 투자자 대상 마케팅

- 투자계약 성립을 위한 자문
- 지역의 엔젤투자자 그룹 또는 벤처캐피탈과의 연계

마치며

한국에도 대덕특구에 창업예정자의 창업활성화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덕 High-up 프로그램이 있다. 대덕 하이업 프로그램은 샌디에고 UCSD CONNECT 프로그램을 한국에 맞게 도입하여 첨단기술기업의 창업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대덕 하이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 클러스터, 포항 클러스터, 대구 클러스터 등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석박사 인력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대학을 중심으로서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젊은 청년들이 더욱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속한 연구자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기술을 단순히 유통시키는 것보다 강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술사업화에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에는 폰 레이빅 센터와 같이 기술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은 없으며, 연구자들에게 기술 외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클러스터의 꽃인 최첨단기술은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본적 결합이 융합된 대학주도의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생겨나길 기대하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1. 8 |

불구수지약(不龜手之藥)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귀 회사가 배가 고파질 땐 어디를 보는가?

“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 어느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이에 송나라 사람은 하루 아침에 큰 돈이 생기게 됨을 기뻐하며 그 처방을 팔았다. 객은 그 처방을 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왕을 설득했다. 오나라는 그 약의 도움으로 월나라와의 겨울철 수전(水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어 봉토를 하사하였다. 같은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진 제후가 되었다.

(출처 : 장자의 소요유)

”



허성원 변호사

헌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자문위원
조달청 우수상품 심사위원
특허법률구조사업 심사위원
강연기부 활동 '10월의 하늘' 등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 중소기업들은 초식동물과 같다. 한 번의 포식으로 며칠을 빈둥거리려도 되는 육식동물(대기업)과 달리, 초식형 중소기업들은 끝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먹을거리를 보충하여야만 기초대사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비즈니스의 들판은 이미 너무도 척박해져 있다. 풀뿌리 하나 건지기 어려운 황야를 우리 중소기업들은 오늘도 처절하게 새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정작 참기 힘들 정도로 배가 고파지면, 어떤 기업은 자신을 되돌아보고는 입을 줄이거나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떤 기업은 '행운은 발뒤꿈치에서 나오는 거야'라며 더욱더 죽기 살기로 시장을 헤집고 다니며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생존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은 얼마 가지 못해 금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나마 다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은 자신의 머릿속을 뒤지고 쥐어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자 몸부림친다. 이들은 거친 황야로 나서기보다 자신만의 고

유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길 역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그 앞길이 험하기 이룰 데 없다. 그렇게 노력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생산이라는 다른 고개와 마케팅과 시장이라는 더욱 더 큰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 고개들의 마루에서 많은 기업이 좌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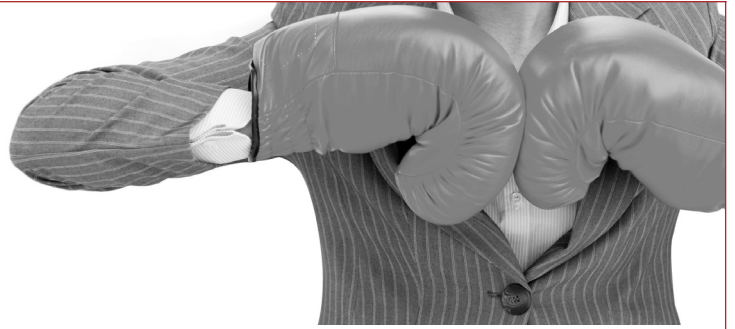
배고픈 사자가 하늘을 보는 이유는..

독수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독수리가 무리지어 날고 있는 곳에는 필시 다른 사냥꾼이 이미 사냥에 성공하여 포식하고 있다. 사자는 그런 포식현장을 찾아 사냥감을 빼앗는다. 다소 치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스스로 땀 흘려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단시간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실패의 리스크도 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비즈니스계에도 사자와 같은 육식성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국적 거대기업들로서 스스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남이 잡아놓은 기술로 배를 채우거나 핵심역량을 구축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설에 기초가 된 DOS도 빌게이츠가 혈값에 사들인 것이었고, 애플의 초창기 핵심역량이었던 PC, GUI(Graphic User Interface), 마우스 등은 사장될 뻔하였던 제록스의 기술이었다. P&G의 신제품 중 50% 이상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도입한 외부 기술에 의한 것이다. 이들 거대기업들은 지금도 다른 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들을 M&A 등을 통해 계절스럽게 포식하고 있다. 그런 포식을 위해 그들의 눈은 항상 독수리를 찾는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시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개방된 혁신 마인드의 엔진에 실으면 얼마든지 쉽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자신의 핵심역량을 구



축하여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자의 사냥법을 보려면 정글로 가라!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서는 제대로 된 사냥법을 배울 수 없다. 앨런 래플리 전 P&G 회장의 말이다. 사업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머릿속의 지식은 동물원 안에 갇힌 사자와 다름없다. 많은 CEO들은 '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우수한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실패한 많은 벤처 기업인들이 경험하는 중대한 착각이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고 있거나 원하게 될 것을 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보면 현재 성공적인 제품이나 기술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미래에 각광받을 기술이 무엇인지 크고 작은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다. 많은 매스컴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 연일 떠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망 없는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사업으로 생각되는 비디오 가게나 사진관을 최근에 새로이 여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았을 것이다. 최근 아이패드 등으로 인해 전자책이 대세로 되어 가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도 부덕부덕 출판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화석연료 엔진의 시대가 몇 년 내 종언을 고할 것임을 누구나 예견하고 있는데도 그와 관련된 분야에 여전히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곳곳에서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업종이 급격히 몰락하거나 새로이 크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코닥, 소니, 노키아 등의 몰락과 애플과 페이스북 등의 급속도 성장에서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과 변화를 읽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변화를 읽었다면 내 분야와 관련하여 전망 있는 아이টে를 수집하여 열거하고, 그 중에서 내 역량으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아이টে를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망 좋은 아이টে를 찾고 보니 이제는 내 기술적 역량이 미치지 못함을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술적 역량의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베껴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적 솔루션은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다. 내가 필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미 개발해두고 있다. 다만 내가 게으르거나 무지해서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특허자료는 기술의 보고이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특허제도를 두고 있고, 그 중 대부분 국가의 특허공보는 온라인을 통해 검색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허는 모든 기술 영역을 커버하므로, 사실상 이 세상에 나온 대부분의 기술은 특허자료의 형태로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다.

원래 특허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특허 부여를 미끼로 하여 발명 공개를 촉진하여, 그에 따른 기술 및 산업 발달을 도모하는 데 더 큰 목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그렇게 공개된 특허자료가 연구개발의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허자료로 공개된 기술을 자르고 비틀고 덧붙이고 비평해서 무한히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낼 수 있다.

또 남의 특허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 이미 만료된 특허,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 특허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기술, 그냥 연구개발에만 이용하

는 경우, 다른 분야의 특허 기술 등등. 무엇보다 짜릿한 것은 남의 특허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용하되 특허침해로 되지 않는 회피기술이나 우회기술을 구사하는 경우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특허에 기초한 연구개발 방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즉 ‘특허 베끼기 전략’인 셈이다. 우선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내지 제품을 결정하면, 그 기술이나 제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특허를 모조리 찾아서 끌어모은다. 그렇게 모은 특허자료들을 국가별, 기업체별, 기술 분야별, 구성 요소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분류된 기술을 보고 써야하거나 관계가 있는 기술들을 추려낸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써도 문제없는 기술들을 분류하여 적극 반영하고, 특허 분쟁의 소지가 있는 특허를 찾아낸다. 분쟁이 우려되는 특허에 대해서는 일단 회피기술이나 우회기술 등을 심사숙고하여 고려해보고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으면 내 고유의 기술로서 특허화를 추진한다. 만약 회피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그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타진한다. 무효화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라이선싱이나 기술매입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독자의 기술을 구축하게 된다. 기간도 불과 3~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비용과 시간도 단축되지만, 무엇보다 타인의 특허와의 관계에서 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확실히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베낀 그 기술은 대체로 검증된 것들로서 실제에 적용하여도 리스크가 매우 낮다.

모든 창조의 근간은 베끼기이다.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모방한다는 사실이 좀 불편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모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걷고 말하고 사람 행세하는 것 모두 모방이다. 모방은 창조의 출발이다. 모방이란 말이 불편하면 ‘벤치마킹’이나 ‘리버스엔지니어링’이란 말을 사용해보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고, 피카소는 “뛰어난 예

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창조의 출발은 현재의 상태에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남다른 관심과 감수성이다. 그 감수성의 해소를 위해 어딘가에 있을 베낄 대상을 끈질기게 찾는 지식 축적 과정과, 베낄 대상을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 요리조리 변형하여 적용하는 창의력 발휘과정이 창조의 뼈대를 이룬다. 하지만 창조의 그것만으로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세상에 내놓는 실행 과정이 창조의 완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이다.

사실 베끼기에 기초한 기술개발 창의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술분야에서 가까운 곳에서 베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의력이 높은 베끼기도 있다. 내 기술분야로부터 좀 떨어진 것을 베끼면 창의력이 높고 멀리서 베낄수록 더욱 창의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연으로부터 모방한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벨크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한 100대 발명 중 하나이다. 이런 훌륭한 베끼기의 예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빌려라!

엔지니어 출신의 CEO들은 땅과 돈은 빌려쓰면서도 남의 기술을 빌리는 것을 그리 즐겨하지 않는다. 나도 개발할 수 있다는 엔지니어의 고집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고집이 시간과 비용 및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부에서 빌려 써라!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부족한 자원은 빌려서 쓴다. 땅, 돈, 인력 등. 빌린 돈을 지렛대 삼는 금융레버리지가 있듯 기술레버리지도 있다. 우리나라의 괄목할 경제성장도 엄청난 기술레버리지의 성과이다. 한 해 약 30억 달러 이상의 기술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빌려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라이선싱이다. 특허침해를 피할 수 없거나 해당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패키지로 도입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P&G와 같이 외부전문가가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소기업에서도 잘 벤치마킹하면 매우 효과적인 ‘빌리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서두에 예화로 든 “손 트지 않는 약”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한 기술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가치 창출의 크기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사장되거나 변변히 가치창출 못하는 기술을 값싸게 빌려와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많다.

라이선싱 이외에도 특허 등의 매입, 기술자문, 공동개발, 아웃소싱 등을 통해 자사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면서 외부 인력의 우수한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외부 기술 인력의 활용은 통상 비용을 수반하지만, 협업 개발 등을 통하면 적은 비용으로 공동의 발전을 가져가는 성공적인 윈윈 전략을 도모할 수도 있다.

내부의 지혜를 빌려라!

돈 들이지 않는 최고의 ‘빌리기’는 내부 직원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다.

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들의 지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을 가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간혹 중소기업의 테크니컬 미팅에 참여해보면 대체로 대표

나 개발담당 임원이 설거나 개발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전달하고 직원의 아이디어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가끔 직원이 나름대로 마음먹고 제안하면 일인지하에 부정적인 평가로 눌러버려 더 이상의 창의적 발언이 나올만한 의지의 싹을 뿌리 채 잘라버린다. 물론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코 창의적이지 못하다.

얼마 전에 어느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을 데리고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을 지도한 적이 있다. 이 회사도 통상의 회사와 같이 다소 권위적인 업무 분위기였기에 직원들의 의욕은 높지 않았다.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워밍업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겐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나를 포함한 모두가 깜짝 놀랐다. 15명이 하나의 기술 주제에 관해 내놓은 아이디어는 250개 정도였고, 쓸 만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약 50개, 그 중 당장이라도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이 20건이 넘었다. 역시 집단은 개인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창의적 분위기로 묶어놓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창의력이 나온다. 고급 승용차를 사서 1단 기어만으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내 인력의 집단적인 창의능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면 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라.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들의 발명을 회사의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회사는 연구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출원 보상금은 통상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이다.

많은 회사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기도 하고,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는 발명자의 이름을 빼버리고 모든 특허출원이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올린 경우도 있다. 직원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과 발명자로서의 명예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불씨가 된다. 이렇듯 직무발명제도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도 효과적인 제도로서,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의 역량부족보다는 회사의 시스템에 훨씬 더 큰 귀책이 있다 할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지혜를 회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윈윈제도임 원 명심하라!

베끼고 빌리는 것, 그 자체가 창조다!

이미 널리있는 것들을 베끼고 빌려 사용하는 것 그 과정이 창조적 과정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무엇을 어떻게 베끼고 빌릴 것인지를 진지하게 학습하여 적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도출해내는 노력의 결과가 창조이다. 하수들은 자신의 부족한 머리를 쥐어짜서 공색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남의 것을 베끼고 빌려서 그것을 능가하는 새롭고 진보적인 창조를 이끌어낸다.

스티브잡스도 "혁신과 창의성은 어디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한비자(韓非子)가 말한 리더들의 등급을 소개한다.

- 하급 리더는 자기 능력을 이용하고(下君盡己能)
- 중급 리더는 남의 힘을 이용하고(中君盡人力)
- 상급 리더는 남의 지혜를 이용한다(上君盡人能)

진정한 보상은 무엇일까?



백운수 교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연세대학교 발명동아리 지도교수

깃발이 휘날린다!

병사의 힘찬 손짓 끝에 휘날림 없이 조용히 오르던 깃발이 깃봉 끝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휘날리기 시작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행사장에 대형 선풍기라도? 전혀 바람이 불 것 같지 않은 새둥지 모양의 내부 행사장에 무협영화에나 나올법한 장풍을 일으키는 도인이라도 초청하였나?

수년 전에 TV로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을 보다 느꼈던 장면이었다. 아마도 깃봉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깃봉 끝에 구멍들을 통해 바람을 내보내었으리라 추측되지만, 이 자그마한 데까지 세심히 배려된 연출에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순간을 더 확실히 각인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 작은 문제를 포착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실험과 방안을 검토한 노력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눈에 들어 왔다.

결국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어 그 가치를 발휘할 때, 아마도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은 그 실현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진행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창안자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접 겪은 두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자.

작년 늦가을 어느 날 대기업에 취직해 있던 제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연인즉 그날 어느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제안을 모 연구소 박사의 발표로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 발표 도중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대충 얼버무리고 속히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로부터 약 8개월 전 봄 학기 준비로 분주한 오후에 걸려온 전화

한통이 생각났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분이 연구실에서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사유를 알기 위함이었다. 대략 설명하고 통화를 마치려 하는데도 자세히 물어와 그러면 찾아오시라 하고 마무리를 하였었는데.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등록 거절된 내용이니 그 누가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연구를 마치 자신들이 새로이 연구한 것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한 사례는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발명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맥 빠지는 경우이다. 다름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홍보를 하였는데 어느 업체가 문의를 해와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 주었다. 그런데 그 출원된 내용에 대해 역으로 분석한 후 다른 연구기관에 특허 회피방안을 강구토록 연구협약을 맺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과 사업까지 전개를 한 경우이다. 이후 어느 TV 프로그램에 그 회사가 자기네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팔고자 출연하였는데, 이를 본 제자들이 저보고 특허를 매각하였는가를 인사차 문의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다. 물론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언가 개운치 않다. 특허회피를 하면서 성능은 미흡하게 되었지만 시장에 선 진입 하려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사례이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발명자도 지식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수렴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본 상식 정도는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발명이라는 과정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련해 가는 열정을 필요로 하며 이런 열정은 선순환이 되어야만 향후에도 개인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만 된다. 즉, 이와

같은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해법이 제시되어 진일보하여 감과 동시에, 인류의 삶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더해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유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상체계가 사회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보상체계가 성숙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에 있어 동기유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기유발에는 외재적 동기유발과 내재적 동기유발이 있는데 당연히 내재적 동기유발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같은 외재적 동기유발도 창의성

을 발휘하는데 있어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유발의 기제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

정년을 맞이한 어느 노학자가 조용한 마을에 집을 새로이 장만하고 이곳에서 저작활동을 하며 노년을 보낼 계획을 세우며 이

주하여 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집 옆 공터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러다 그치겠지 하였는데 거의 매일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 소음도 정도를 넘어서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할 형편이 되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공터에 나가 공을 차는 아이들에게 여러 칭찬과 더불어 여기 와서 놀 때마다 천 원씩 각자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였다. 수일간 그 약속을 잘 이행하다가 하루는 그 비용이 커서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얼마 후 백 원씩 밖에 줄 형편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아이들 중 한명이 공을 잡고는 무리를 보고 “야 가자.”하는 말과 동시에 아이들이 그 공터로부터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판단이 든다. 즉 아이들의 공놀이는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순수한 내재적 동기유발에 의해 발생된 행동들이었는데 이 노학자가 순수한 동기유발을 외재적 동기유발로 바꾸고 이에 대한 상실감을 안겨서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진다.

자 우리들 주변을 둘러보자.

“ 자! 우리도 태극기를
힘껏 휘날려 보자.
후대가 더욱 당당하게
느끼도록! ”

우리들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제도들이 이러한 외재적 동기유발의 보상체계를 구사하고 있다. 혹여 이런 제도나 환경이 내재적인 순수한 동기유발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도 학생을 가르칠 때에 여러 외재적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메카니즘을 사용하지만 그보다도 내재적 동기유발을 유도하는 방법론이 더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순수한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이 지식재

산권으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지식재산권을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에 그 가치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안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고 장려하는 시스템과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할들 거기에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011. 8 |

독점하기 위한 특허

반환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예측과 함께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는 현재의 나를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를 향해 끝인 점으로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달려 나아가야 한다.



김 배 훈

현) (주)영국전자 대표이사
2004제네바발명전 금상, 러시아 대표부상 수상
2004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상 수상

오 해로 내 나이 50살, 마라톤경기서 반환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취미삼아 마흔에 시작한 달리기운동도 어느덧 10년이 흘러 내 인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벗이 되었다.

반환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예측과 함께 달려왔다면 지금부터는 현재의 나를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를 향해 끝인 점으로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달려 나아가야 한다.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선친께서 70년도 후반부터 CCTV 개발사업을 시작하신 관계로 나는 일찍부터 집안일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학생신분으로 틈틈이 CCTV 설치공사를 하러 다녔다.

지금은 CCTV가 일반화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최초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CCTV에 대한 개념은 고사하고 선입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카메라를 설치할라치면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정도였다.

CCTV의 초기용도는 주로 인력감시, 즉 주인이 종업원을 감시하거나 사장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많았다.

공장이나 사무실, 매장의 천장위에 좌.우/상.하/줌이 원격에서 조정 가능한 CCTV 카메라 즉, 집중감시카메라(Pan/Tilt/Zoom Camera)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설치할 때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물어보기 일쑤였다.



“그거 달면 우리들 다 모니터에 나와요?” “예, 사장님이 다 볼 수 있어요.” “에이, 우린 이제 죽었다” 마치 내가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천정을 통해 케이블을 연결해 사장실로 이동하여 모니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곳 사장님은 “이 모니터만 보면 전부 볼 수 있죠?” “예”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면 사장님은 은은한 미소를 짓곤 하셨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러 최종적으로 카메라 렌즈조정을 위해 간이용 모니터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 화면을 보고 조정을 할라치면 또 직원들이 모두 모여들어 “영상 어떻게 나와?” “어! 요기만 보이네” “아! 이제 알겠다.” “카메라가 도는데만 보여” “별거 아니네”하고 직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또 최종적으로 사장실의 모니터에 조정된 영상을 표출시키면 사장님은 “어! 다보인다고 하지 않았어? 왜 여기만 보여,”나는 예상했다는 듯 순발력 있게 “모니터 밑에 있는 버튼을 좌,우,상,하로 누르면 돌아가면서 다보이잖아요.” 대답하곤 시범을 보여준다. 그 순간 사장님의 표정은 어두워지며 말없이 한동안 모니터를 보다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누가 이걸 계속 누르고 앉아 있어.” 하고 불만 섞인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람들은 영상감시(Surveillance)의 개념을 원초적으로 본인이 그곳에서 감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욕망한다.

전체적으로도 보고 오감으로 감지하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될 사물을 선택하여 집중감시도 하고, 즉 집중감시와 전체감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 30년 동안 집중감시만 있는 영상감시가 행해져 왔으며, 전체감시는 기술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필요성 자체도 사람들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어릴 적 그 사장님이 표현 못한 영상획득의 아쉬운 부분의 토로를 잊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06년에 전체감지 개념을 집중감시에 접목시킨 카메라시스템(제목 : 실시간 사각지역 없이 집중감시 가능한 감시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함과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때마침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방범용 카메라시스템이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설계가 이루어져 초기에는 매출도 많이 올렸으나 조금 지나지 않아 모방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등록받은 특허로 경고장을 보냈으나 여의치 않았다. 등록받기에 급급해 만든 특허가 권리행사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특허에 대한 기대감이 나에게 크나큰 좌절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현재 동종업계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30년전 CCTV가 이땅에 처음 도입되던 시기의 귀중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져 있으므로 지금 현재진행 중인 영상감시의 큰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지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지금 첫 번째의 실패는 시작 즉, 초기 원시적인 형태에 불과하다. 변화 끝 부분의 종결 판을 공략하자며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영상감시센서가 고화질화로 급격하게 변함과 동시에 시스템 IC의 대중화 또한 렌즈기술이 초광각으로 특화되어감으로써 전체감지(Whole

Sight)의 종결 판이 가능해졌다.

이런 때 2006년의 전체감지의 초기버전에 대한 특허의 실패를 떠올리며 2008년 전체감지 종결 판에 대한 특허 제작에 들어가서 2년여 동안 여러 다른 관점에서의 전체감지에 대한 10여 건의 특허를 완성했다.

제품개발도 이루어져 지금은 전체감지가 집중감시를 컨트롤하며 전체 감시시스템의 플랫폼 역할까지 하는 없어



그림 1. 다수의 검지카메라 연동시스템(전체감지의 초기모델)



그림 2. 어안렌즈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전체감지의 종결 판)

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30여 년 전의 기억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우리 분야의 기술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2년여 앞당길 수 있었다는 나의 자부심은 특허로 승화되어 전 세계 40여 개국에 출사표를 내놓고 있다.

2012년부터는 지금껏 준비해온 감지 종결 판에 대한 특허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여 달려보려 한다. 전체감지(Whole Sight) 개념을 일반 surveillance분야 뿐만 아니라 특수 영상 분야로 『감시, 산불감시, 방폭카메라 등』에도 접목시켜 감시의 패러다임을 새로 써 나아갈 것이다.

30여 년 전의 나의 기억과 2006년도의 실패는 현재 10여 건의 전체감지(Whole Sight) 특허를 가지고 제2의 창업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나는 전체감지(Whole Sight)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특허들을 바탕으로 한 제품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해당 특허들을 더 잘 준비하고 완성하고 관리해 나아갈 것이다. 시장의 독점과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의 초석이 되는 것은 결국 특허이기 때문이다. 2011. 8 |



IP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일본 우베코산社, 홍콩 ATL社에 전기분해액 관련 특허 라이선스 체결

지난 7월 4일, 일본 우베코산(宇部興産)社は 휴대폰배터리 제조업체인 홍콩 Amperex Technologie(ATL)社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전기분해액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라이선스는 스마트폰용 전지 수요를 개척하여 라이선스 수입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우베코산社は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ATL社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출처 <http://www.nikkei.com>

일본 미츠이 조선社 등, 인산철 리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취득

지난 7월 7일, 일본 미츠이(三井) 조선社와 스미토모오사카(住友大阪) 시멘트社 등 4개사는 전 세계에서 인산철 리튬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발표하였다.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인 인

산철 리튬(lithium iron phosphate)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사의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 글로벌 유통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인산철 리튬은 다른 정극재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정치식(定置式) 전원이나 차재용 전지에 이용하는 차세대 정극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미츠이 조선社나 스미토모오사카 시멘트社 등이 생산 공장 확대를 계획하게 된 것도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nikkan.co.jp>

일본 교토대학, iPS 세포 제작 기술 유럽에서 특허등록

지난 7월 11일, 일본 교토(京都)대학은 iPS 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럽에서 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4번째이다. 유럽에서 등록된 특허는 iPS 세포 제작에 사용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일본 특허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인정받았다.

권리 기간은 국제 출원한 2006년 12월 6일부터 20년 간이고, 2011년 5월 30일에 인정을 받았다. 8월에 유럽 특허청(EPO)에 등록될 예정이며, 향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17개국에서 등록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asahi.com>



미국 Apple社, 국제무역위원회 회에 삼성과 HTC社 제소

지난 7월 5일, 미국 Apple社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8일에는 대만 HTC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가 ITC에 Apple社를 제소한 것에 대응한 것이다.

HTC社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송이며, Apple社가 법원보다 사건처리 속도가 빠른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출처 online.wsj.com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 하이웨이 참여요건 변경 발표

지난 7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변경된 요건은 지난 7월 1일 PPH 강화 체제 시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캐나다(CIPO), 호주(IPAU), 일본(JPO), 핀란드(NBPR), 러시아(ROSPATENT), 스페인(SPTO), 영국(UKIPO) 등 7개국과 USPTO 간의 PPH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변경된 PPH 프로그램 조건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출처 <http://www.patentdocs.org>

미국 법원 등, 주요 6개 기업에 Nortel社 특허 매입 승인

지난 7월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 상급법원은 6개 기업에 Nortel社의 특허 매입을 승인하였다.

두 법원은 파산한 Nortel社의 무선기술 관련 약 6,000개의 특허를 Apple社, Microsoft社, RIM社 등 주요 6개 기업들이 45억 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Nortel社は 지난 2009년 1월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법원이 기업자산 처분을 감독해 왔다.

경매에서 매각된 특허는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광학, 음성, 인터넷 및 반도체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LTE 등 4G표준 관련 특허도 포함한다.

낙찰로 인한 판매 가격은 Nortel社의 자산이 되며 Nortel社의 채권단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낙찰 받은 그룹은 경쟁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매입한 특허를 사용함으로써 특허 수익률을 최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reuters.com>



유럽 특허청, 스페인 특허 상표청과 남아메리카에서 공동활동을 위한 계약 체결

지난 7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과 남아메리카에서의 공동 지식재산 활동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남아메리카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유럽 및 스페인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합의 내용은 특허심사, 행정업무, 인적자원 개발, 사무자동화, 특허정보 교환, 특허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SPTO의 Amparo Fernández 청장은 이번 합의체결이 남아메리카에서의 스페인의 역할을 인식한 결과이며, 특허보호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epo.org>

유럽연합, 2010년 지식재산권 세관집행 통계 발표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유럽 외부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세관집행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외부국경에서 10억 유로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제품 약 1억 300만 개를 압수하였다.

불법 선적 건수는 2009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8만 건이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의약품 및 바디케어 제품에서 나타났다.

전체적인 압수품목에는 담배 42%, 사무용품 9%, 라벨 및 태그 8%, 의류 7%, 완구 7% 등이 해당되며, 압수물품의 약 14.5%는 삼푸, 비누, 의약품, 가전제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다.

주요 침해국가로는 중국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터키, 태국, 홍콩, 인도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출처 <http://www.europa.eu>



세계는 지금

영국 지식재산청, 중소기업 특허소송 비용 관련 법 발표

지난 6월 1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소기업이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 PCC)에서 수행하는 50만 파운드 이하의 소송의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2011 특허지방법원 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소규모 기업들이 50만 파운드 이하의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권리를 방어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연기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소송가액이 낮고 간단한 중소기업 관련 소송들은 자동적으로 PCC 관할로 된다.

출처 <http://www.ipo.gov.or.kr>



중국 최고인민법원 등,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주요 내용 발표

지난 7월 7일, 중국지식재산권사법보

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올해 초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관련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다.

의견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중 친고죄에서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관련 단서를 제시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이다.

출처 <http://www.chinaiprlaw.cn>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011년 상반기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공개

지난 7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2011년 상반기 SIPO에 접수된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공개하였다.

2011년 상반기 접수된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44.8% 증가한 67만 6천 건이다. 발명특허 21만 8천 건, 실용신안특허 24만 5천 건, 의장특허 21만 3천 건이 접수되었다.

중국 내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49.4% 증가한 61만 4천 건이었으며 해외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6만 2천 건이다.

특허등록 건수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44만 5천 건이며, 2011년 상반기 특허등록 건수 중 중국 내 등록된 특허가 40만 7천 건, 해외에 등록된 특허는 3만 8천 건이다.

SIPO는 중국 내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기업의 특허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2011년 상반기 위법사건 단속 현황 발표

지난 7월 9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전국 국장 좌담회에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72,600건의 위법사건을 단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단속에 의하여 적발한 사건의 규모는 약 100억 8,800만 위안이다.

SAIC는 유명 브랜드명의 상호등록에 대한 단속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를 단속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억제하였다.

SAIC는 2011년 하반기 역시 위조품, 허위광고, 불법경영 등 단속업무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출처 <http://www.sipo.gov.cn>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PO NEWS

평창(Pyeongchang)을 글로벌 브랜드로 만든다

특허청은 평창군과 공동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평창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평창군 고유의 지역브랜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브랜드 컨설팅 사업은 지자체 보유 브랜드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및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2006년부터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브랜드의 상표등록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성공으로 충북 진천군 대표 농산품인 '생거 진천쌀'이 2010년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충남 서산시는 '서산6쪽마늘'로 2007 원예농식품 파워브랜드 국무총리상 및 2009 한국지방자치브랜드(농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창군의 브랜드는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들 지역브랜드 전부에 대하여 브랜드 맵을 구축하고 디자인 요소 진단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더욱 차별화된 명품브랜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과 농협중앙회 지재산권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특허청과 농협중앙회는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와 농업인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9일, 농협중앙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ATM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의 강화 등이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고객들은 현재 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는 특허수수료 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ATM 기기로도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KIPO NEWS

서버 기반 컴퓨팅(SBC) 으로 특허넷 보안 강화

특허청은 특허넷의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구축중인 3세대 특허넷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인 서버 기반 컴퓨팅(SBC)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SBC : Server Based Computing

SBC는 모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방식의 컴퓨팅 기술로서 사용자 PC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고, 모든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집중관리하여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 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허넷시스템에 SBC 기술이 적용되면, 모든 문서는 서버에만 저장되고 심사관들의 업무망(網)인 특허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기 때문에, 특허출원서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허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의 유입도 막을 수 있는 등 특허넷의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모든 업무처리가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높은 성능의 PC를 갖춰야 할 필요가 없어 PC의 잦은 업그레이드에 따른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접속환경과 관계없이 업무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고, 데이터 복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SBC 도입을 포함한 3세대 특허넷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분석·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SBC 구축에 필요한 서버 및 데스크탑 가상화 엔진 등 전산자원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로서(입찰마감기한 7.29), 올 하반기에 SBC 환경을 구축하여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SBC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상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사범 25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관광지 주변 등 그동안 사법기관의 단속이 소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 사무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위

조상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불법으로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켜온 이 모(여, 50세)씨와 서울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명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온 박 모(남, 46세)씨 등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25명을 검거하고 위조상품 2,880점(시가 14억 3천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은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밀창고를 따로 마련하여 놓고 단골손님에게만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등 현장단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에게 손님이라고 속이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PC방을 이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리가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단속인력 증원, 수사경력자 특채 등을 통해 자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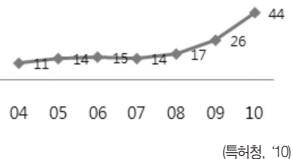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손잡았다

특허청은 지난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제 지재권분쟁 대비 국내 기업 네트워크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재권공세는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분쟁대응능력은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산업 중소기업 분쟁사례

외국기업으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소건수



- GSM : 에릭슨(스웨덴)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업체에 로열티 요구('04~'06)
- LED : Nichia(日)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년동안 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06~'07)
- 지상파 DMB : MPEG LA(美)가 국내 중소 지상파 DMB단말기업체에 로열티 요구('06)
- RFID : Sisvel(伊)은 국내 RFID 업체에 로열티 요구('11)



* 지재권 관련 전담부서나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5.6%에 불과 ('09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정부지원 방향 및 기업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협의체가 분쟁의 사후대응보다는 사전대비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불확실한 분쟁에의 대비를 위한 내부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분쟁에의 사전대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분쟁 대비 국내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산업별·기술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의체 운영결과로 제시되는 기업의 대정부 정책제안과 특허청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분쟁예방컨설팅, 특허 소유권 이전 동향정보 제공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 파트너쉽 확대 발표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지난 7월 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WIPO 지식재산 협력회의를 갖고, 양 기관 간 협력 파트너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인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기존의 국제특허, 국제상표 분야에 이어 앞으로 디자인 국제출원 분야에 있어서도 양 기관간 협력이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전 세계 이용자들의 편리한 PCT 국제특허제도 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WIPO PCT 정보화(ePCT)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공 특허청

KIPA NEWS



우리회 · 소망교도소 MOU 체결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연중교육 지원

우리회와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19일, 「공정사회 실천」 나눔발명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과 소망교도소는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협력 사업 발굴 및 연중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눔발명교육**이란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대표적 소외계층 중 하나인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회 재통합에 기여함.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신앙훈련, 생활훈련, 재활훈련 등)을 시행하는 국내 및 동양 최초의 민영교도소임.

기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우리회, 현대 HCN <해피타임 12> 프로그램 촬영 진행



우리회는 지난 7월 21일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현대 HCN <해피타임 12>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점심값을 기부해 해외아동을 돕자는 취지로 제작된 것으로 이날 출연자는 '기부'라는 의미 있는 활동은 물론, 팀을 나눠 재미 있는 게임도 즐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긴 팀에게는 점심의 허기를 달래줄 행복한 간식이 제공됐고, 아쉽게도 패한 팀은 '기부 CF' 촬영의 미션이 주어졌다. '작은 기부'로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해외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직원 간 화합의 시간도 갖는 뜻 깊은 자리였다.

최종협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한 끼 점심을 굶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는 직원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며 "한국발명진흥회도 <KIPA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본 촬영분은 8월 중순경, 현대 HCN 케이블방송 지역채널 12번을 통해 서초·동작·관악 지역에 방송될 예정이다.



2011 직무성과계약 체결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저한 성과관리 다짐

우 리회는 지난 7월 1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전사 (부회장 ⇄ 본부장) 및 단위조직(본부장 ⇄ 팀장) 간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입·과정 지표보다 결과(산출물) 지표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65개의 전사 성과지표(KPI)를 새로이 정립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계약은 면담을 통해 단위 조직별로 성과목표를 도출하여 직원들에게 성과책임을 부여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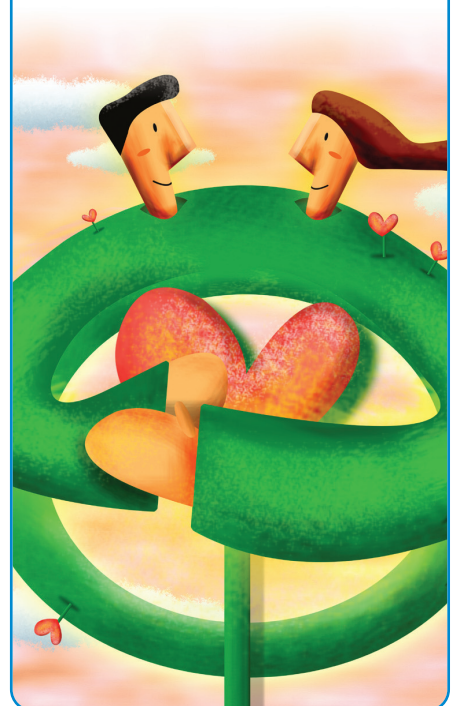
이날 최종협 부회장은 “올해는 우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예년보다 경영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성과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소아암 불우 어린이 돕기 및 다문화 가족·위기청소년 초청 사랑 나눔 행사 후원협찬금 전달

우 리회 최종협 부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주)케이앤 아이와 함께하는 「소아암 불우 어린이 돕기 행사」, 그리고 「다문화 가족 및 위기청소년 초청 사랑 나눔 행사」에 각각 후원협찬금을 전달하였다.

우리회는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결연 아동 3명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Ulleungdo 경상북도



울릉도호박엿

당도가 높고 육질이 두꺼운 울릉도산 호박을 30% 첨가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었으며 치아에 달라붙지 않고 담백해서 어린이, 신세대, 노인층까지 즐겨먹는 기호식품이 되었다.



| 상표명 |
울릉도호박엿

| 권리자 |
사단법인 울릉도호박엿 생산자협회

| 등록번호 |
제 29호

| 상품분류 |
제 30류 호박엿

연락처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6



1/ 유래

19세기 초 울릉도 개척 당시 이주민들이 만들어 먹은 것은 '호박엿'이 아니라 '후박엿'이었는데 섬에 자생하는 후박나무의 진액이나 열매를 이용해 엿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것을 후박나무를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후박엿과 발음이 비슷한 호박엿으로 부르면서 '호박엿'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후박나무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호박으로 엿을 만들게 되어 울릉도 하면 호박엿을 연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이다.

2/ 특성

울릉도호박엿은 울릉도호박엿만의 오랜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울릉도 지역 내에서 재배 생산된 완숙된 늙은 호박을 30% 이상 첨가하여 만들고 있다. 당도가 높고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울릉도산 호박으로 만든 울릉도호박엿은 호박 고유의 열은 황금색을 띠며, 먹을 때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가 작고, 단맛이 적당하여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Gochang 전라북도



고창복분자주

전라북도 고창군의 특산물 복분자딸기를 발효하여 만든 과실주이다. 정력제로 알려졌다으며 고창 복분자주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선보인 이래 복분자주는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되었다.



전라북도 고창



| 상표명 |
고창복분자주

| 권리자 |
고창으뜸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9호

| 상품분류 |
제 33류 복분자주

연락처
고창으뜸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
063-532-2030

1/ 복분자의 전설

옛날에 한 부부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늘그막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병약하였다. 좋다는 약은 죄다 구하여 먹여 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지나가던 스님이 복분자를 먹이라고 권하여 날마다 복분자를 부지런히 먹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들은 매우 튼튼해졌다. 그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좋은지 소변을 보면 소변 줄기가 요강을 뒤편에 버릴 만큼 강하였다. 그래서 하도 신기한 나머지 이 약재의 이름을 복분자, 즉 요강을 뒤편에 과실이라고 지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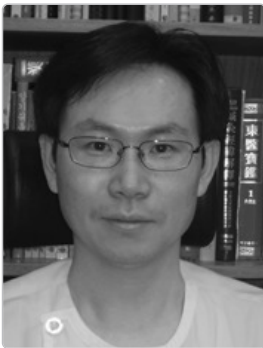
2/ 특성

고창은 복분자 생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고창복분자는 단맛과 신맛이 좋으며 색깔과 향이 독특하여 술을 제조하여 마시게 되면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다. 고창복분자는 오랫동안 고창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응하여 특이한 맛과 향을 갖고 있다.



효소다이어트와 요요방지

40대 이후에는 기력이 약해지면서 신진대사도 더디고 체내효소와 호르몬의 분비도 적어지므로, 많이 먹지 않아도 복부비만이 심해질 수 있고 체지방이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 간의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도 대사가 잘 안되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효소한약을 복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올 여름에는 효소다이어트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자.



이 태 원

현 천안 태종한의원 원장
대전대 한의학과 학사
대전대 한의학과 석사(본초학 전공)
대한발효한약학회 정회원

작 년 이맘쯤에 방송된 한 예능프로그램의 ‘공개다이어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고도비만 일반인들이 헬스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100일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감량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이어트 100일 후, 이들은 무려 40~50kg나 감량했다.

살만 뺏을 뿐인데 그들은 전혀 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밝은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40~50kg를 감량한 이들이 2~3년 후에도 요요 없이 계속 몸짱 몸매를 유지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요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요요현상을 경험한다.

요요방지를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왕성한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에 실패하는 것이다.

반대로 식욕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조직에 영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자꾸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원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가 부족해서는 아닐까?

요요현상은 항산화효소의 부족이 원인

단기간에 급격하게 체중감량을 하면

체지방분해과정에서 체내 효소가 빨리 소모된다.

금방 축적된 지방조직은 대사과정이 그나마 단순하지만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지방조직은 산화되거나 조직이 변성되어 셀룰라이트 같이 딱딱한 지방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해되기 어려워 더 많은 효소가 소모된다.

또한 체지방이 분해되는 대사과정에서 활성산소(유해산소)와 같은 노폐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므로 세포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효소가 많이 소모된다.

특히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간의 효소가 많이 소모되고 활성산소(유해산소)도 많이 발생하여 항산화효소가 부족해지기 쉽다.

하지만 항산화효소는 체내에서 무한정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다. 빨리 소진될수록 생성 및 분비는 줄어든다.

항산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면 내분비 호르몬인 인슐린 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항산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세포조직의 노화가 촉진되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므로 혈당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되어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대사장애가 유발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슐린 저항성' 이라고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췌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남아도는 혈당을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하여 예비 에너지원으로 세포조직에 저장시켜서 혈당을 소비한다.

따라서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중성지방 형태로 체내에 계속 축적되므로 단기간 내에 살이 많이 찌거나 요요현상이 자주 오게 되고 세포조직은 포도당 기근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며 탄수화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식욕은 왕성해진다.

이렇게 되면 식사를 해도 금방 허기지게 되고 피로감도 많이 느낀다.

따라서 다이어트 할 때나 요요관리 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야채, 과일 그리고 약초(한약)로 각종 천연효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항산화 능력



을 높이고 향산화효소 분비를 활성화시켜야 갑작스러운 폭풍식욕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요요 없는 효과적인 체중관리가 가능하다.

효소다이어트는 획기적인 다이어트 패러다임

하지만 식품의 정제기술과 가공기술이 발달하고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쉽게 하기 위해 화식(火食-음식을 불에 익혀먹는 것)을 하면서부터 열에 약한 효소와 미량영양소들이 파괴되어 점점 음식물을 통한 천연효소의 섭취가 부족해지고 있다.

인간은 식물처럼 자연의 에너지를 직접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 뿌리를 박고 영양을 흡수하며 하늘로부터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대사를 하는 식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여 간접적으로 대자연의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생명력이 강하고 자생력이 뛰어난 초목은 효소

가 풍부하고 효소의 활성화도 강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인간이 약초로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

천연약초에는 본연의 약효와 함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자연숙성시켜 발효효소로 만들어 섭취하면 약효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향산화능력이 놀랍게 향상되고 향산화효소도 활성화되어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특히, 효소한약은 삼백초, 비파, 차조기, 질경이, 택사 등의 약초를 '락토바실러스 랍노시스' 유산균과 발효진주 등을 이용하여 6개월 이상 항아리에서 자연발효 숙성시켜서 만든 발효효소액으로 향산화작용과 체지방분해 효과가 탁월하다.

'락토바실러스 랍노시스' 유산균은 사람의 장에서 체지방을 줄여주는 물질인 공액리놀레산(CLA:Conjugated Linoleic Acid)을 만들어낸다.

공액 리놀레산(CLA)은 체지방 감소, 항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 억제 등의 활성을 갖고 있다.

기존 다이어트 효소식품이 산야초와 설탕만 이용한 자연발효 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효소한약은 포도당과 랍노시스 유산균을 이용하여 장기간 발효숙성시키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효소의 활성이 훨씬 높아진다.

따라서 효소한약은 체중감량 효과와 요요방지 효과가 탁월하며 포만감이 오래동안 지속되고 만성피로도 줄어든다.

40대 이후에는 기력이 약해지면서 신진대사도 더디고 체내효소와 호르몬의 분비도 적어지므로, 많이 먹지 않아도 복부비만이 심해질 수 있고 체지방이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

간의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도 대사가 잘 안되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효소한약을 복용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폭식증으로 다이어트에 번번히 실패하는 분들에게도 효소다이어트를 추천하고 싶다.

효소다이어트야 말로 진정한 해독다이어트며 웰빙다이어트다. 올 여름에는 효소다이어트로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자.

발명 365

어떻게 이런 일이...



철조망

미국의 13세 소년을 세계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 철조망이다. 목동 조셉은 가끔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농장을 망쳐놓는 바람에 귀증을 들곤 했다. 그러다가 양들이 가시가 돋친 냉쿨잠미 울타리로 가는 접근하지 않고, 기둥에 철사만 둘러친 울타리로만 넘나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셉은 대장간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가 철사 중간중간에 철사를 넣어 새끼처럼 끈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러자 양은 한 마리도 철조망을 넘지 못했다. 조셉 부자는 목장주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하고 공장을 세웠다.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국경선용으로 쓰기 위한 주문이 쇄도하여 조셉 부자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미국의 계리사 11명이 1년 동안 계산해도 모자랄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한다.



청바지

요즘도 전세계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청바지는 실패를 입고 일어난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발명가는 천막 천의 생산업자였던 미국의 스트라우스.

193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많은 황금이 나왔다. 그러자 황금을 캐라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서부는 초만원이 이루었고, 전 지역이 천막촌으로 변해갔다. 스트라우스는 이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납업자가 대형 천막 10만여 개의 천막 천을 납품하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의했다. 스트라우스는 3개월간 주문량을 만들어냈으나, 군납의 길이 막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화김에 술집에 들은 그는 광부들이 모여 앉아 헤진 바지를 꿰매는 것을 보고 천막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 닳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시장에 첫선을 보인 것이 전 세계로 퍼졌다.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설명

zone of natural expansion

현재는 상표의 선사용자가 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선사용자가 상행위를 통하여 상표의 사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의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의 자연적 확장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선사용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음.

written statement of expert opinion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면. 법규 또는 경험법칙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서면.

written request for a deposit

미생물을 기탁하는 서면.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한 기탁서의 경우에는 instrumental deposition을 사용함.

written reply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출원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반론하는 서면.

written refutation

이의를 신청한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반론서.(일본)

written disclosure

특허청에 개시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는 출원심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 예컨대 선행기술, 공연한 실시, 판매, 기타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는 기재된 서면에 의해 개시되어야 함.(37CFR§ 1.56)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초고속 심사란 무엇인가요?

A.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술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초고속 심사 대상
 -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 것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 우선심사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것
- 신청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후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의뢰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출원에 표시하고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첨부
 -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첨부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우선심사 여부 결정시 초고속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의 우선심사 신청과 같이 취급됩니다.

Q. WIPO 접근코드란 무엇입니까?

A. DAS(Digital Access Service)는 WIPO가 중개자가 되어 특허청 간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게 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후출원국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DAS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최초 출원 특허청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DAS가 개통된 국가는 2009.10월 기준 일본, 미국, 한국, 스페인, 영국이며 개통 예정인 국가는 중국, 핀란드, 이스라엘입니다. 최초출원국과 후출원국 모두 DAS 개통이 완료되어야 DAS를 이용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서면 제출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출원 예정국가가 미국, 일본, 유럽일 경우에는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후출원국가의 우선권 주장 항목을 기재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절차가 면제됩니다.

지식재산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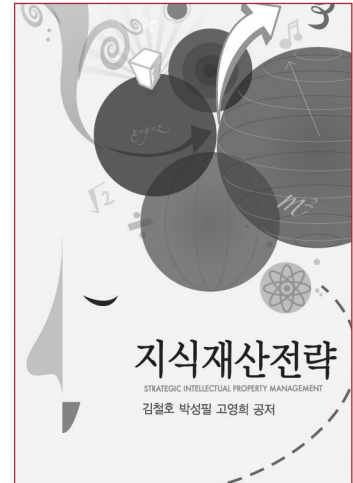
생생한 사례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혜를 배운다!
지식재산전략(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되면서 우리기업은 유럽연합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등과의 FTA가 야기할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기업의 몫이 되고 말았다.

본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지식재산 담당 최고 임원이 참조할 수 있는 지식전략 매뉴얼로, 대학 강의용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식재산 분야 서적들과 달리 전략적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식재산 관련법과 제도,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되, 한 걸음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의 선진적인 지식재산 경영전략들을 다양하게 분석, 그 사례를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하여 우리 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모델들을 정립해 가기 위한 역량 배양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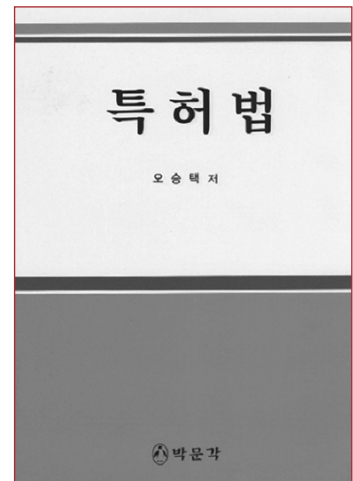
저 자_김철호, 박성필, 고영희 공저
 가 격_38,000원
 발행처_한국발명진흥회
 구입문의_서울경제경영출판사 02-313-2682

특 허 법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맞춰,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발간되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권 개요, 특허제도 일반, 발명과 특허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한다. 또한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를 발간한 저자 오승택 박사는 다년간 한국발명진흥회 근무, 대학교 강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최고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저 자_오승택
 가 격_30,000원
 발행처_박문각

뮤지컬

2011 뮤지컬 난타 대구공연

2011. 8. 24 ~ 8. 28

폭발적인 리듬!! 터질듯한 해방감!

Cookin' gives off Good Vibes! - The New York Times
One of The Best Shows You'll Ever See - The Scotsman
Top Entertainment! - The Stage
A Big Hit! Spectacular! - News Week

국적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파워풀한 공연으로 스트레스 해소!!

요리사가 손만 대면 훌륭한 악기로 변하는 프라이팬, 생수통, 칼~ 자진모리, 옷다리, 푸너리 등 한국 고유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장단에 5명의 개성강한 등장인물이 펼치는 코믹한 해프닝까지! 설세 없이 터지는 웃음을 간직한 난타는 계속되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매순간 더 좋은 공연, 더 신나는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연, 그것이 바로 난타입니다.



공연장소 : 대구북산문화회관 가온홀(대극장)
공연기간 : 2011. 8. 24 ~ 2011. 8. 28
관람시간 : 100분
기획사 : 파워엔터테인먼트(주)
문의 : 053-762-0000

전시

2011 아시아프 (ASYAAF,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2011. 7. 27 ~ 8. 22

예술, 내 삶에 들어오다 Art, coming to my life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국내 최대 젊은 예술인들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일보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주최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축제 '2011 아시아프(ASYAAF ·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 아시아 대학생 · 청년작가 미술축제)'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장소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홍문관 1, 2층)
전시기간 : 2011. 7. 27 ~ 2011. 8. 22
기획사 : (주)조선일보사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7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한올모발

- 대표 자: 박명원
- 업태/종목: 소매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46-12(신암빌딩3층)
- 전화번호: 053-942-5805
- 홈페이지주소: www.gabalok.com / www.한올.com



대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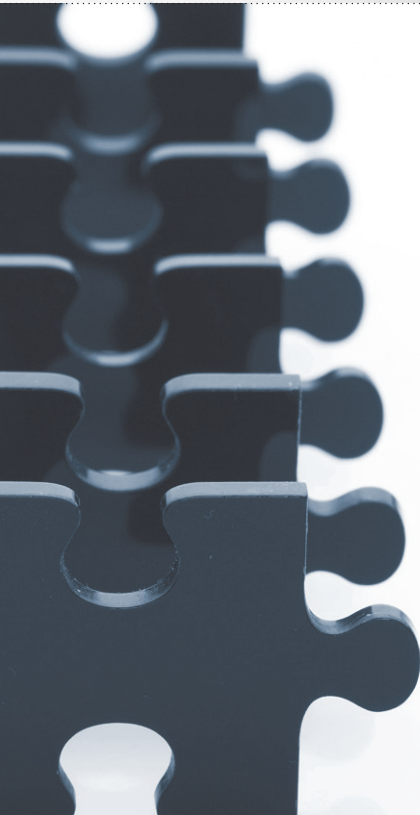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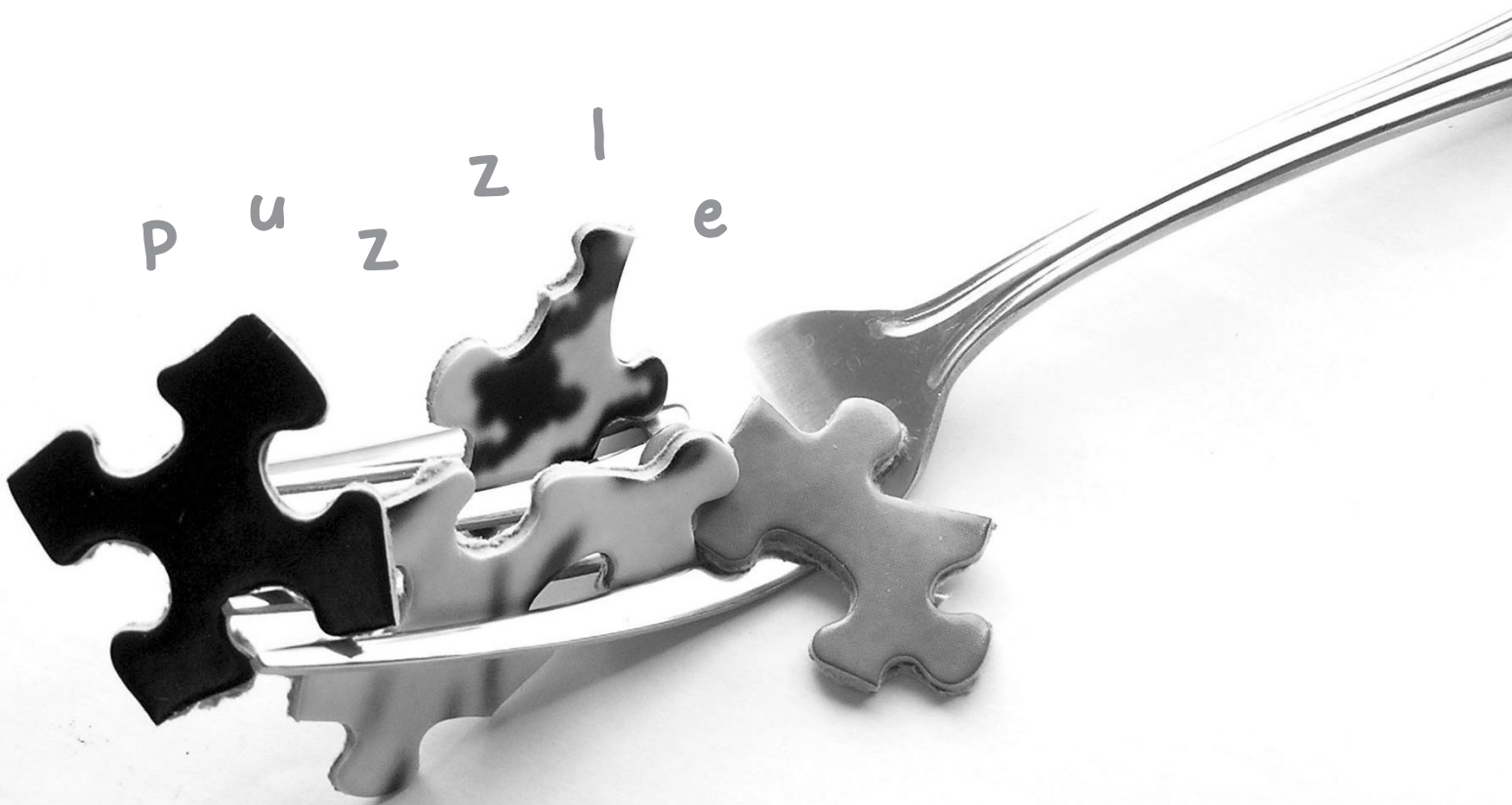
- 대표 자: 이승택, 조영현
- 업태/종목: 서비스 외 / 변리사 외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5-25 포커스빌딩 3층
- 전화번호: 02-3452-5004
- 홈페이지주소: www.daejupat.com



이장원

- 대표 자: 이장원
-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95-67 4층
- 전화번호: 02-352-4064





이 부분을 함몰시켜 기계를 통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주소는 반드시 주시어주세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여)

주소:

전화: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9F 전략기획팀

1 3 5 - 9 8 0



월간 **발명특허**
2011. 8

독자 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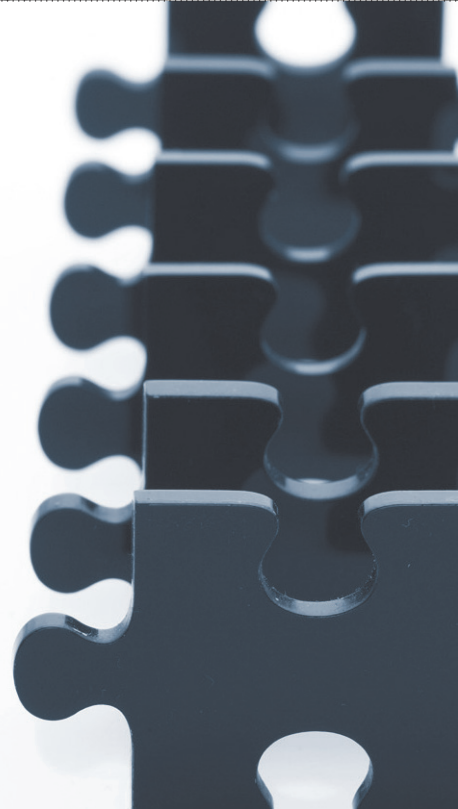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8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PUZZIE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 문 열 쇠

1. 마음이 통하고 친한 친구. 남몰래 정을 통하는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이르는 말.
3.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의 양. 보통 용매 100mL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을 그램 수로 나타낸다.
4. 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는 뜻으로, 독서(讀書)를 권장(勸獎)하는 말. 개권(開卷)은 책을 펴서 읽는 것을 말함
6. 말의 마디나 구절.
9. 산기슭이나 호숫가 같은 곳에 지어 여름철에 휴련용, 피서용으로 쓰는 산막(山幕), 별장 따위의 작은 집.
11. 새벽에 수탉이 해치는 것을 그린 그림. 특히 새봄에 많이 그린다.
12. 토지 구획 정리를 할 때 비유이나 공공용지 따위로 땅의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개인의 땅이 줄어들는 일.
14.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15. 속에 품고 있는 참뜻. 또는 진짜 의도.

세 문 열 쇠

2.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씬.
4.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제이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이에 속하며, 과거에는 후진국이라 불렀다.
5.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 신어의 일종으로 해학성, 풍자성을 띠며 신기한 느낌이나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7. 비둘기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듯이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함. 또는 그런 회의.
8. 남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10.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아무 소용(所用)이 없음. 또는 자기(自己)가 급해야 서둘러서 일을 함
12. 고려 시대에, 창고의 관리 및 감독을 맡아 하던 외직(外職) 벼슬. 동북면과 서북면에 두었다.
13. 태권도와 복싱, 에어로빅을 합쳐 만든 운동.
15. 소리가 하늘에까지 떨쳐 울림.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7월호 정답

고	도		고	진	감	래
	기	면	증		진	
공			학		기	소
황	석	영		긴		탐
	전		공	자		대
야	경	국	가		구	실
	우		교	두	보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용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아이디어가 선풍타격기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